

2012년 선정 중견연구자지원사업

결 과 보 고 서

사업명	2012년 선정 중견연구자지원사업					
과제번호	NRF-2012S1 A5A2A0102 0356	연구과제명	한국의 상담자교육 인증체계개발 연구			
기본정보	성명	소속	연구기간	연구비 (간접비제외)		연구보조원
	김인규	전주대학교	2012. 5. 1 ~ 2015. 4. 30 (3년)	1차년도	19,820천원	2명
				2차년도	19,000천원	2명
				3차년도	19,920천원	2명
				계	58,740천원	6명

차 례

I. 연구목적 및 방법 -----	1
1. 당초 연구의 목적, 필요성 및 연구목표 -----	1
2. 당초 연구 내용, 범위 및 방법 -----	2
II. 연구수행 내용 및 결과 -----	3
1. 1년차 연구 -----	3
2. 2년차 연구 -----	17
3. 3년차 연구 -----	34
III. 연구결과 활용계획 -----	81
1. 연구결과 활용계획 -----	81
2. 연구성과 -----	82
IV. 참고문헌 -----	84

I. 연구 목적 및 방법

1. 당초 연구의 목적, 필요성 및 연구목표

○ 현재 전문상담은 한국에서 매우 중요한 서비스 분야로 부상하여 학교폭력, 위기청소년, 다문화가정 등 사회적 주목을 받는 대상들 뿐만 아니라 군, 기업, 노인, 위기경험자 등 사회 전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정부 부처 중 교육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뿐만 아니라 국방부, 노동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등에서 전문상담 업무를 다루고 있는 것을 통해서도 얼마나 상담이 우리 생활 전 분야에 관계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

○ 상담에 대한 이와 같은 사회적인 관심과 필요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수한 전문 상담자 양성이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의 전문상담자 양성은 주로 일반대학원 과정에서 이루어져 왔으며 상담직의 전문화를 위해서는 학부과정에 상담관련학과가 설치, 운영되어 상담의 기반 마련과 대국민 의식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왔고, 이에 2000년대를 전후하여 학부에 상담학과가 설치되기 시작였다.

○ 현재 우리나라의 학부, 일반대학원, 상담대학원, 교육대학원 등에서 운영되는 상담자교육과정은 각 대학의 상황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하여 운영되고 있어 그 전문성과 체계성, 통일성이 부족한 현실이다(김인규, 2008b; 박경애, 방기연, 2007; 이숙영, 김창대, 2002; 최해딤, 김영해, 2006). 즉 다양한 학위과정간의 차별성과 연계성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동일 과정도 학교에 따라 그 내용과 수준이 동일하지 않아 일정한 상담 관련 학위를 취득한 자의 지식과 능력의 수준을 보장하기 어려운 형편이다. 이와 같은 상담자교육과정의 문제는 상담자적 혼란과 맞물려 현재의 상담 활성화에 심각한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

○ 상담에 대한 사회적 수요의 급증, 다양한 상담서비스 개설, 다양한 상담교육 및 상담자격 발급기관 설립은 상담의 대중화에 기여하는 긍정적 측면이 있지만, 질적 수준이 담보되지 않는 상담자 양성과 상담서비스 제공으로 인해 오히려 상담의 발전과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위험성도 있다(이상민 등, 2007; 김인규, 2009b, 2009c, 2011). 이를 위해 상담법제화(김인규, 2009), 상담관련 국가표준 마련(강진령 등, 2009), 상담교육과정 체계화(이숙영, 김창대, 2002), 체계적인 상담체제 구축(최상근 등, 2011) 등의 방안이 제기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져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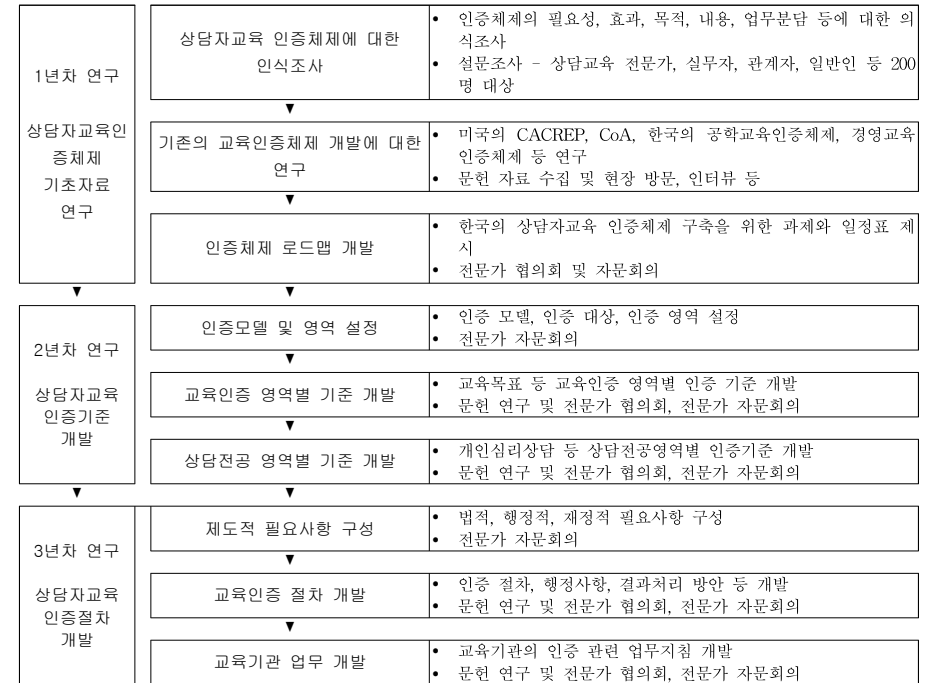
○ 질적으로 수준 높은 상담자의 양성은 전문상담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충족시키고 전문상담의 위상을 확보하며, 상담계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매우 핵심적인 사안이라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개별 교육기관 스스로의 노력 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 상담교육기관과 그 내용을 관리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 교육인증체제 구축은 관련 학교, 학회, 현장 전문가 등의 합의를 도출하고, 이에 기반하여 광범위한 실문작업이 필요한 사안이라 오랜 시간과 많은 노력을 필요로 한다. 국내 공학교육의 경우 1988년 공학교육인증설립위원회가 발족되고 3년이 지난 2001년부터 인증기준 KEC 2000을 갖추고 인증평가업무를 시작하였다.

○ 이에, 본 연구에서는 상담의 전문성 및 효과성 제고를 위해서는 질적으로 수준 높은 상담자를 양성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 충분한 준비를 거쳐 상담자교육 학위과정 또는 프로그램에 대한 인증체제를 구축해야 하는 필요성에 따라 한국의 상담자교육 인증체제 구축을 위한 준비로서 상담교육 인증의 기준과 절차를 구안하는 기초적인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2. 당초 연구 내용, 범위 및 방법

본 연구는 한국의 상담자교육 인증체제 개발을 위한 3개년간의 연구로서 1년차에는 상담자교육인증체제 기초자료 연구, 2년차에는 상담자교육인증기준 개발, 3년차에는 상담자교육인증 절차개발 등을 실시한다. 본 연구의 연차별 연구내용과 연구방법의 개요는 그림 1과 같다.



[그림1] 연차별 연구내용과 연구방법

II. 연구수행 내용 및 결과

1. 1년차 연구

가. 주요 내용

본 연구는 3년간의 연구로서 1차년도 연구의 목표는 상담교육인증체제 개발을 위한 기초 자료를 마련하는 것이다. 기존의 교육인증체제에 대한 연구, 한국형 상담교육인증체제에 대한 인식조사, 한국형 상담교육인증체제 개발의 우선순위 교육과정 선정, 교육인증체제 구축 절차 등을 개발하였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 한국형 상담교육인증체제에 관한 설문조사 : 대다수 응답자들은 우리나라 상담교육의 현실에서 각종 자격증의 난립과 상담자의 질 저하, 상담자 양성체계의 난맥성을 주요 해결과제로 인식하고 있으며 상담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과 상담실습이 가장 필요하다고 인식함. 대부분의 응답자가 상담교육 인증체제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식한 것으로 나타남.
- ▶ 기존의 인증체제 개발에 대한 연구 : 미국의 CACREP은 이론과 실습체제가 분명한 상담프로그램이며 고용시 CACREP 졸업자가 선호되거나 CACREP 졸업자로 자격제한을 두고 있음. 한국의 공학교육인증체제, 경영교육체제는 각각의 학회에서 인증을 담당하는 별도의 인증기구를 인준 설치 운영하고 있음. 각 대학의 프로그램의 질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고 있음
- ▶ 전문가 풀 구성 및 활용 : 상담자교육 전문가협의회를 15명으로 구성하여 1회 전문가 협의회를 개최하고 공학인증에 참여하고 있는 실무자와 1회 자문회의를 개최함. 연구방향과 향후 과제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2,3차년도에 상담자교육의 인증기준과 절차를 개발하는데 계속적으로 활용할 계획임.

나. 연구 내용 및 방법

1) 기존의 교육인증체제 연구

가) 연구 방법
기존의 교육인증체제 개발에 대한 연구를 위하여 미국의 CACREP 인증 매뉴얼 전체를 번역하여 분석하였고, 우리나라의 공학교육인증 체제, 경영교육인증 체제에 관한 자료를 수집,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를 2012년 8월 한국상담학회 연차대회에서 발표하였다.

나) 연구 내용

(1) CACREP

CACREP는 CACES, ACES, and ASCA의 공동작업으로 생겨났으며, 1970년대 말 APGA는 국가적 인증기관의 가능성을 알아보기 위해 위원회를 구성했다. 처음의 명칭은 Accreditation Board for Counselor Preparation (ABCP)였으나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포함시키고 고등교육 인증시 두 번의 노력을 해야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CACREP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1987년 COPA의 승인을 받았으며, 그해 Alexandria로 옮겨 전임 근무자를 두게 되었다. COPA가 Council on Higher Education Accreditation (CHEA)로 변경된 후에도 계속 지지를 받아 CACREP 국가적으로 널리 알려지게 되었으며, CACREP의 핵심 교육과정은 대부분 주의 면허 규정의 교육적 요구사항의 기초로 활용되고 있다. CACREP의 8가지 핵심 교육과정 영역은 National Counselor Exam for Licensure and Certification (NCE)에 출제되는 시험문제에 대한 종합적 기초이다.

(가) 인증 절차

단계	내용
1	프로그램에서 자기평가서 제출, CACREP 운영진 검토
2	CACREP 1차 검토위원회의 검토(6-8주 정도)
3	1차 검토 보고서를 프로그램으로 송부
4	현장방문 위해 방문위원을 선정, 방문일정 협의(최소한 방문 12주 전)
5	CACREP는 현장방문위원 소집, 팀구성. 프로그램은 추가사항을 4부 제출
6	프로그램은 현장방문 준비
7	현장방문(대개 일요일 저녁에 시작, 수요일 오전에 마침)
8	현장방문 팀은 보고서 작성하여 CACREP 사무국에 제출(현장방문 후 2주 내)
9	CACREP은 기관장에게 보고서 송부
10	프로그램은 기관차원의 반응보고서 제출(30일 이내)
11	각 프로그램은 회의 45일 전 자료 제출
12	CACREP Board of Directors에서 인증여부 결정
13	회의 후 30일 이내에 최종결정 안내문 송부

(나) 인증 기준(CACREP Standards)

① 전체 개요

서론

1장 교육환경 : 구조와 평가

1. 교육기관(the institution) A-H
2. 학과단위(the academic unit) I-T
3. 교수진(faculty and staff) U-Z
4. 평가(evaluation) AA-DD

2장 전문적 정체성

1. 교육의 기초(foundation) A-C
2. 지식(knowledge) D-G

3장 전문 실무능력 훈련

1. 수퍼바이저 자질과 지원 A-E
2. 상담실습(practicum) F
3. 인턴쉽 G

A. 중독상담(addiction counseling)

1. 교육의 기초
2. 상담, 예방, 개입
3. 다양성과 홍보
4. 사례 사정(assessment)
5. 연구와 평가(evaluation)

B. 진로상담(career counseling)

C. 임상정신건강상담(clinical mental health counseling)

D. 결혼, 부부, 가족상담(marriage, couple, and family counseling)

E. 학교상담(school counseling)

F. 대학상담(student affairs and college counseling)

상담자 교육과 슈퍼비전 박사과정의 기준

1장 교육환경

1. 교육기관(the institution) A
2. 교육 프로그램(the program) B-F
3. 교수진(faculty and staff) G-K
4. 평가(evaluation) L

2장 전문적 정체성

1. 교육의 기초(foundation) A-B
2. 지식(knowledge) C

3장 전문 실무능력

1. 임상 경험(clinical experience) A-C

4장 박사 과정의 성과물

1. 슈퍼비전
2. 교육활동(teaching)
3. 연구와 학문
4. 상담
5. 지도력과 홍보

② 주요 내용

제 1장 교육환경 : 구조와 평가

- 교육기관에서는 입학기준, 인가상태, 교육전달체계, 프로그램의 최소조건, 입학조건, 장학제도를 포함한 교육 프로그램과 학사과정을 정확하게 기술해야 한다.
- 교육기관은 충분한 재정지원과 연속성, 질, 효과성이 보장되는 프로그램들을 제공한다 것을 약속한다.
- 진로상담, 학교상담, 대학상담에서 입문 수준 학위 프로그램은 모든 학생에게 요구되는 최소 48semester 인증시간 또는 72quarter 인증시간으로 구성된다.
- 전체학생에 대한 전체 교수의 비율이 10:1을 넘지 않아야 한다.
- 실습과목과 인턴십의 그룹 슈퍼비전은 12명의 학생을 넘지 않는다.
- 실습과목과 인턴십 경험은 개별지도 훈련으로 한다. 프로그램 교수가 개인 또는 3인조에게 슈퍼비전을 제공할 때 1개의 3-semester hour로 구성된과정은 가르치기에 적절하도록 1명의 교수당 6명의 학생의 비율로 구성한다.
- 교수진은 상담자 교육에서 적어도 3명의 전임교수를 임용한다. 상담자 교육과 슈퍼비전에서 박사학위 소지자(CACREP 인증프로그램 취득자 우대) 또는 2013년 1월 이전에 최소한 1년 동안 전임교수를 요구하는 상담자 교육프로그램에 고용된 사람이어야 한다. 전문가로서 타당한 자격증과 적절한 증명서를 갖추고 상담전문조직(ACA나 ACA분과 나 지역학회 등)의 회원으로서 상담전문성이 인정된 사람이어야 한다.
- 학생은 교과과정을 진행하는 교수와 임상경험을 제공하는 슈퍼바이저를 공식적으로 평가하는 규칙적이고 체계적인 기회를 갖는다.
- 교수는 매년 학생과정평가의 결과물을 제공한다.

제 2장 전문적 정체성

- 프로그램의 목표는 다문화 및 다원적 사회에서 상담실무와 관련하여 연구과제에 표현된 욕구와 현재의 지식을 반영해야 한다.
- 프로그램의 활동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어야 한다.
- 강의 요강은 모든 편입생과 예비학생이 이용할 수 있도록 내용의 범위, 지식과 숙련 성과, 지시에 대한 방법, 필요원서와 독서, 학생들의 성취평가 기준과 순서를 포함해야 한다.
- 프로그램의 모든 학생들에게 8개의 공통적인 핵심 교육과정이 제공되어야 한다. 8개의 핵심교육

과정이란 전문적 오리엔테이션과 윤리적인 실습, 사회성과 다양성, 인간의 성장과 발달, 진로발달, 조력관계, 집단작업, 평가, 연구와 프로그램 평가이다.

- 전문적인 오리엔테이션과 윤리적인 실습은 상담전문직의역사와 철학, 상담 슈퍼비전 모델, 실습과 과정, 상담자 역할에 적당한 자기관리 전략 등 상담가로서 필요한 전문적이고 윤리적인 표준 등으로 구성되었다.
- 사회성과 문화적 다양성은 다문화적 상담의 이론, 동일성 발전, 사회적 정의, 선입견이나 편견으로 인한 역제와 차별의 과정 속의 상담자 역할 등에 대한 이해를 제공한다.
- 인간의 성장과 발달은 개인과 가족의 발달이론, 전 생애 동안의 전환, 개인, 문화, 부부, 가족, 공동체의 탄력성에 관한 이론과 모델 등에 대한 이해를 제공한다.
- 진로발달은 진로발달과 관련된 삶의 요소, 진로발달 이론과 의사결정 모델, 진로와 교육적인 계획, 일자리 찾기, 추수지도와 평가, 등에 대한 이해를 제공한다.
- 조력관계는 다문화 사회 속에서의 상담과정에 대한 이해, 조력과정에 영향을 주는 상담자 특성과 행동, 필수적인 면담과 상담기술, 실제적인 자문과 이해에 대한 일반적인 틀을 제공한다.
- 집단 작업은 다문화 사회에서 집단의 목적, 발달, 역동, 이론, 방법, 기술에 대한 이론적이고 경험적인 이해를 제공한다.
- 평가는 사정과 평가를 하는 개인적 접근과 집단적 접근에 대한 이해, 평가의 의미와 특성에 관련한 역사적인 전망, 신뢰도, 타당도, 개인과 집단, 특수한 집단의 평가와 관련된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요인들에 대한 이해를 제공한다.
- 연구와 프로그램 평가는 연구방법, 통계분석, 요구사정, 프로그램 평가, 행위연구와 프로그램 평가에 사용되는 통계적인 방법 등에 대한 이해를 제공한다.

제 3장 전문 실무 능력 훈련

- 전문적 실무능력 훈련은 실습과 인턴십을 포함하고 슈퍼비전하에서 이론의 적용과 상담기술의 발전을 제공하고 소수민족과 사회의 인구학적인 다양성을 보여주는 내담자를 상담할 학생들을 위해 기회가 제공될 것이다.
- 개인적 또는 그룹의 실습과목이나 인턴십을 하는 슈퍼바이저로서 기능하는 프로그램 교수진은 적합한 상담의 준비, 또는 박사학위를 가져야 하고 가급적이면 CACREP이 공인한 상담자교육 프로그램을 선호한다.
- 슈퍼바이저는 관련 경험과 적합한 자격, 면허, 상담에서 증명된 능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연관된 슈퍼비전 훈련과 경험이 있어야 한다.
- 개인적으로는 그룹의 실습과목의 학생의 슈퍼바이저로 일하는 학생은 반드시 석사 학위뿐만 아니라 CACREP이 공인한 입문수준 프로그램에 대응하는 상담실습과 인턴십 경험을 마쳐야 한다. 또한 이들은 상담 슈퍼비전을 현재 받고 있거나 마쳐야 한다. 프로그램 교수에게 슈퍼비전을 받는데 교수와 학생의 비율이 1:6을 넘지 않아야 한다.
- 현장 슈퍼바이저는 최소한 석사학위나 그와 동등한 자질을 가진 관련 직업을 가지거나, 적절한 자격과 면허를 가져야 한다. 또한 이들은 학생이 등록한 프로그램 중에서 최소 2명의 적합한 전문적 경험을 가져야 한다. 현장 슈퍼바이저는 프로그램의 기대와 요구, 평가 절차에 대한 지식을 가져야 하며 상담 슈퍼비전에서의 적절한 훈련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 학생은 학기동안 총 100시간 이상 최소 10주의 실습과정 경험을 슈퍼비전 받아야 한다. 또한 학생은 상담기술의 발달에 기여하는 실제 내담자와 최소 40시간의 직접적인 상담을 해야 한다. 학생들은 프로그램 교수가 지도하는 개인 혹은 삼인 슈퍼비전을 평균적으로 일주일에 한시간 매주 지도 받아야 한다. 학생들은 학생 슈퍼바이저나 프로그램 교수에 의한 실습을 받는 동안 정규일정으로 제공되는 그룹 슈퍼비전을 일주일마다 평균 1시간 30분씩 받아야 한다. 학생이 실습을 마친 후 그들의 상담수행 평가에는 실습 내내 공식적인 평가 자료가 포함된다.
- 프로그램은 실습과목을 성공적으로 마친 후에 시작되며 학생에게 지정된 프로그램 영역의 600시간

안에서 감독된 인턴십의 수료를 요구한다. 인턴십은 전문적인 상담자와 적절하게 지정된 프로그램 영역의 포괄적인 일 경험을 반영하도록 계획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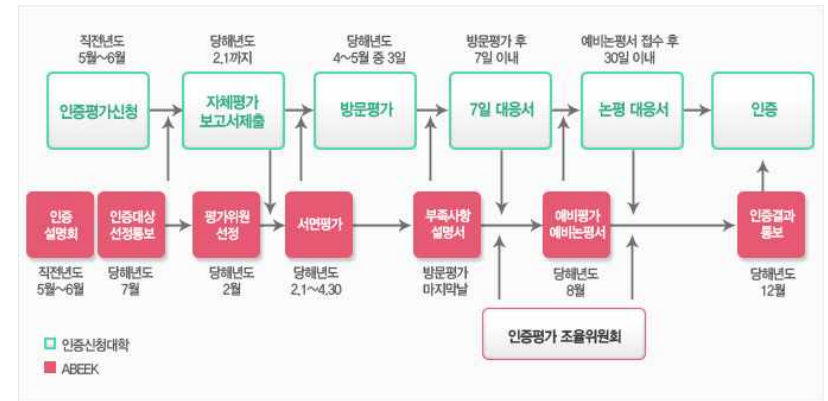
- 인턴십에는 집단을 운영하는 경험을 포함해서 적어도 240시간의 직접 상담을 해야 한다. 대개 현장의 슈퍼바이저에 의해 수행되고 인턴십 동안 개인 또는 삼각 슈퍼비전을 매주 평균 1시간 지도 받아야 한다.
- 인턴십 동안 프로그램 교수에 의한, 정기적인 일정 안에서 제공되는 그룹 슈퍼비전을 매주 평균 1시간 30분을 받아야 한다.
- 인턴십 동안 학생의 상담수행의 평가는 현장 슈퍼바이저와 함께 상담교수에 의한 인턴십을 마친 후 공식적인 평가 기록을 포함한다.

(2) 공학교육인증체제

<표 1> 한국의 공학교육 인증체제 개요

인증기관	한국공학교육인증원 (Accreditation Board for Engineering Education of Korea)
인증시작년도	2001년 5월 시범인증
인증프로그램수	총 85개 대학 590개 프로그램 (EAC:539개, CAC :51개, ETAC:35개) (2012.6.20.)
홈페이지	http://www.abEEK.or.kr
인증비용	EAC.CAC. ETAC 인증신청비 (2012년) 신규평가 : 대학 별(450), 프로그램 별(450) 중간평가 : 대학 별 (350), 프로그램 별(350) 인증유지비용 : 대학 별(50), 프로그램 별(50) 서면 평가비 : 200 (단위 : 만원)

교육환경	대학의 지원, 시설과 장비, 재정지원, 행정지원 및 교육 보조 인력 충분
교육개선	항목에 대한 지속적인 품질개선 활동
전공분야별 인증기준	건축,기계,농공학,산업,생물,섬유,원자력,방사선,자원,재료,전기전자,조선해양,컴퓨터,토목,항공우주,화학,환경공학및 유사명칭 공학 프로그램



[그림 2] 공학교육인증과정

(2) 경영교육인증체제

<표 3> 경영교육 인증체제 개요

인증기관	한국경영교육인증원(Korean Association of Business Education Accreditation)
인증시작년도	2008년
인증프로그램수	서울17 충청1 호남1 영남8 / 국립7사립20 (2012. 4.30)
홈페이지	www.kabea.or.kr
인증비용	예비 심사비 : 300 인증 심사비 : 2,000 / 2,500 / 3,000 (단위 : 만원) 독립 프로그램이 하나 이상인 경우 500만원 추가

공학교육프로그램은 수요지향 교육 및 성과중심 교육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표 2> 주요 인증기준

프로그램 교육목표	졸업생이 활동 할 산업체를 포함함 구성원의 요구를 반영하여 교육기관의 특성에 부합되도록 설정
프로그램 학습 성과 및 평가	지식응용, 분석실험, 설계능력, 해결능력, 실무능력, 팀워크 기술, 의사전달, 평생교육, 이해능력, 시사지식, 공학윤리, 국제화
교과영역	수학, 기초과학 교과목 30학점. 공학주제교과목 54학점. 전문교양교과목18학점
학생	지속적인 평가, 상담, 관찰을 수행
교수진	프로그램의 연속성 및 안정성 보장과 인증유지를 위해 필요한 전문가적 자질

<표 4 > 주요 인증기준

필수 내용영역	일반적 능력 : 의사전달 및 외국어능력 / 논리적 사고와 분석 능력 / 사회에 관한 윤리적 책임
	경영학적 지식 : 회계 및 재무/시장, 제품 및 소비자/생산 및 서비스조직 및 인 적자원/글로벌 환경 및 국제 경영
학점	최소 경영학 전공이수 학점 : 전공필수과목 + 전공선택과목 = 총 45학점 이상
	경영학 전공 필수 과목 : 총 18학점 이상
	필수학점 : 5개 분야에서 분야별 1과목, 최소 15학점 포함
학생-교수 비율	과목당 수강인원 : 80명 이내
	필수과목 수강인원 : 60명 이내
	수강생이 80명이 넘는 강좌는 전체 강좌 수의 20%를 넘지 않아 야 함.

2) 한국형 상담교육인증체제 개발에 관한 설문조사

가)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상담교육과정과 관련 있는 대상을 상담교육자와 상담실무자로 구분하여 한국형 상담교육 인증체제 개발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눈덩이표집방식을 활용하여 각 집단별로 30명씩 총 60명의 대상자를 선정하여 설문회의를 하였으며, 그중 상담교육자 24명, 상담실무자 29명 총 53명이 설문조사에 참여하였다. 설문 응답이 충분하지 않은 두 사례를 제외하여 상담교육자 23명, 상담실무자 28명 총 51개의 설문지가 분석에 포함되었다.

본 설문지를 제작하기 위하여 두 차례의 예비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토대로 설문지를 제작하였다. 1차 예비조사는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수도권과 지방의 상담관련 교수 8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실시하였고 문항은 상담교육인증의 필요성, 상담교육인증의 영역과 내용, 상담교육인증의 절차, 각 학위과정의 인증기준 차별화, 인증체제 구축 후 활용방안 등을 묻는 총 8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2차 예비조사는 본 설문지를 구성하여 3명의 상담실무자와 2명의 상담교육자에게 2차 예비조사를 시행하였다. 이를 토대로 설문의 내용을 교정하고 응답의 편의성과 설문회수를 고려하여 온라인상의 직접 설문조사 방법을 선정하였다. 3차 조사는 본 설문지를 가지고 눈덩이표집방식으로 총 60명을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설문구성은 3개의 영역 총 35문항으로 이루어졌으며, 설문내용은 상담교육 인증체제 개발에 관한 전반적인 의견을 묻는 문항과 상담교육 인증의 영역과 내용을 묻는 문항, 그리고 상담교육 인증의 절차와 방법을 묻는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대부분 각 문항에 대하여 설문 참여자가 생각하는 우선순위를 정하도록 질문하였다.

나) 연구 결과

(1) 상담교육 인증체제 개발

상담교육 인증체제 개발에 대한 전반적인 의견으로는 대다수의 응답자들이 현재 우리나라 상담교육의 현실에서 각종 자격증의 난립과 상담자의 질 저하, 상담자 양성체제의 난맥성을 주요 해결과제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상담현실에서 상담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과 공인자격증을 통한 필터링 제도, 상담실습의 확대, 실무경험이 풍부한 교수진 확보 등이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상담교육 인증체제 개발 필요성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의 96.1%가 매우 필요하다 또는 필요하다고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담자의 전문성 확보와 교육 프로그램의 질 향상, 체계적인 교육과정 마련, 공인 자격증의 취득 등을 위하여 상담교육 인증 체제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상담교육 인증체제의 목표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응답자의 대다수가 전문성 함양과 상담자 양성교육의 중심적 기준 마련, 상담서비스의 질 향상 등으로 인식하고 있음이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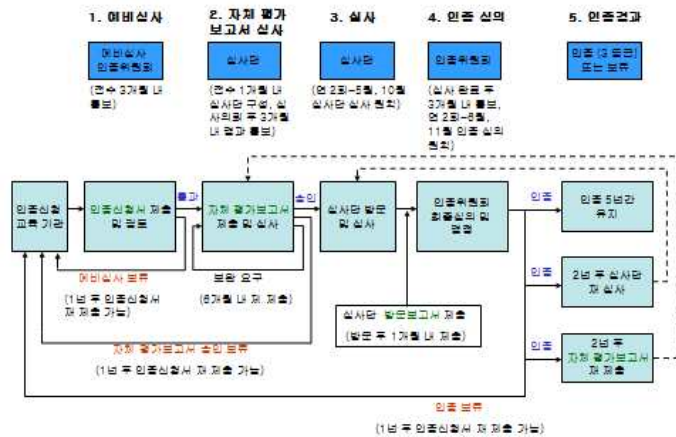
상담교육 인증체제의 주요 역할에 대하여 응답자의 대부분은 상담교육의 질 향상, 상담서비스의 질 향상, 상담학 교육의 틀 마련, 난립하는 자격증 규제 등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상담교육 인증체제의 주요 효과는 전문가 교육 체제 인정과 상담교육, 상담 서비스의 질 향상과 보장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응답자들은 결국 우리나라 상담교육의 현실에서 상담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인증체제를 전문가 교육 체제로 인정받아 상담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일련의 과정(process)을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인증체제의 시행 시, 예상되는 어려움에 대하여 상담교육자와 실무자의 인식의 차이가 나타났는데, 상담교육자는 부족한 전문교수와 교육시설, 분야별 전공 프로그램의 부재를 어려움으로, 상담실무자는 다양한 학회와 단체의 활동, 다양한 학위과정을 어려움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2) 상담교육 인증의 영역과 내용

상담교육 인증체제의 인증영역 구성에 필요한 것으로는 교육과정과 실습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한국경영교육인증원 인증 절차



[그림 3] 경영교육인증과정

것으로 나타났고 그 뒤로 교수진, 학점 등이 중요한 영역으로 여겨진다. 또한, 우리나라 상담관련 교육과정에서 보완되어야 내용으로 응답자의 대다수가 교수진 강화와 실습과 인턴십의 체계적 시행과 정착, 상담실습의 확대 강화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우리나라 상담교육과정은 학부, 일반대학원, 상담대학원, 교육대학원등 다양한 학위과정이 있다. 각 학위과정이 목표로 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정과 실습, 학점, 취득자격 등 교육 요소가 달라질 것이다. 따라서 본 설문에서는 각 학위과정의 적절한 목표에 대하여 질문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의 <표 5>와 같다. 이결과를 통하여 설문 참여자들은 각 학위과정에서 지향해야 될 목표가 각기 다르며 그 목표에 따라 교육내용이 선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함을 알 수 있다.

<표 5> 학위과정별 목표

학위과정	교육과정의 목표
일반대학원 석사과정	과학자-실무자 모델
일반대학원 박사과정	실무자-학자 모델
상담대학원	실무자 모델
교육대학원	전문상담사 양성
학부과정	기본상담인력 양성
상담교사 2급 양성과정	기본 상담인력 양성
2년제 학사과정	전문상담사 양성

다음으로, 상담교육인증체제의 교육과정 영역에 대하여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영역을 중복 선택하는 질문을 하였으며 이에 대한 결과는 다음 <표 6>과 같다. 결과를 보면 실습 및 수퍼비전 영역을 상대적으로 많이 응답하였고 프로그램 개발 영역과 상담정책 및 자문 행정 영역을 상대적으로 적게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교육과정 영역

영역	동의함(응답자 비율)
상담이론	48(94.1%)
상담윤리	48(94.1%)
검사 및 평가	48(94.1%)
프로그램 개발	39(76.5%)
연구법 및 통계	41(80.4%)
실습 및 수퍼비전	50(98.0%)
상담정책 및 자문, 행정	40(78.4%)

다음은 각 학위과정에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실습시간을 선택하도록 하는 질문을 하였으며 먼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총 실습시간을 묻고 개인면접, 개인상담, 집단상담, 인턴십 등 각 하위 유형에 필요한 실습시간을 재질문하였다. 일반대학원 박사과정에 대해서는 600시간, 다른 교육과정에 대해서는 100시간의 실습시간이 적합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많았다.

교육인증체제에서 교육환경이나 여건도 중요한 요소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학부과정과 대학원 과정을 분리하여 각 과정에 필요한 학생 : 교수 비율과 수퍼비전이나 실습의 경우에 적절한 학생 : 교수의 비율을 질문하였다. 그 결과 학부과정과 대학원 과정의 비율이 같게 나타났으며 교수 1인당 학생의 비율이 10명을 넘지 않아야 하며 실습과 인턴십의 그룹 수퍼비전의 경우도 교수 1인당 학생 10명을 적절한 수준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상담교육 인증의 절차와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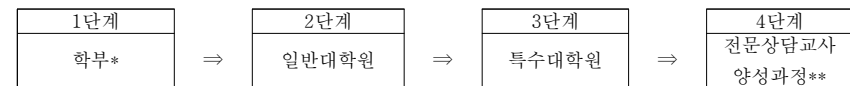
상담교육 인증의 절차와 방법은 국가기관의 인증과 국가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을 중요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담 교육 인증의 기준(평가항목)을 구성하고 상담교육 인증의 심사단을 구성하며, 인증 체제를 준비하고 구축하는 주체는 별도의 인증기구가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또한, 상담교육인증체제의 활용방안으로 국가자격제도와 연계 활성화하여 취업 용이에도 인정하여 주는 것을 우선순위로 여기는 결과가 나타났다. 상담교육인증체제 개발연구는 대학과 학회, 상담 (현장)기관이 공동 개발 연구해야한다는 것을 중요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상담자교육인증체제 구축 로드맵 개발

가) 상담교육과정별 인증체제 개발 및 구축의 순서

상담교육인증체제 개발에 대한 설문조사 및 전문가협의회, 자문회의 등의 결과를 기초로 하여 각 상담교육과정별 인증체제 개발 및 구축의 순서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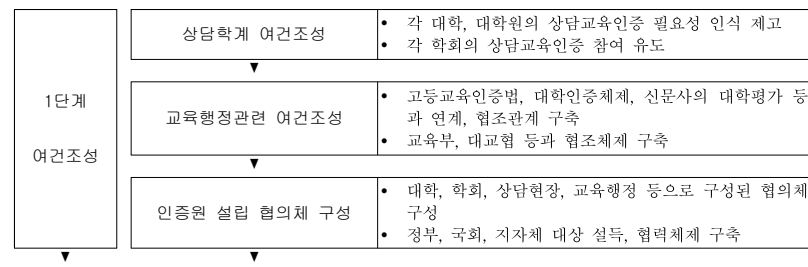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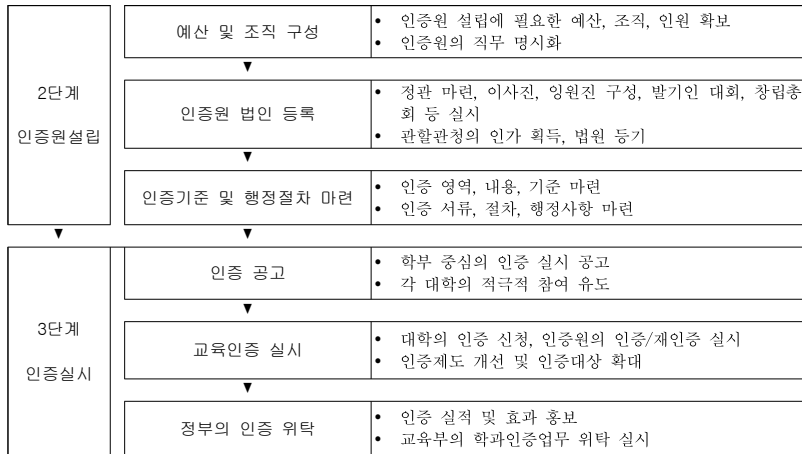
* 4년제 일반대학(2년제 및 사이버대학 제외) ** 교직과정 및 교육대학원

[그림 4] 과정별 인증체제 개발 및 구축의 순서

나) 상담교육인증체제 구축 절차

기존의 인증체제에 대한 연구, 상담교육인증체제 개발에 대한 설문조사 및 전문가협의회, 자문회의 등의 결과를 기초로 하여 상담교육과정 인증체제의 구축절차를 다음과 같이 구안하였다.





[그림 5] 한국형 상담교육인증체제 구축 절차

4) 전문가협의회 및 자문단 구성 운영

가) 상담교육인증체제개발 전문가 협의회

상담자교육관련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된 전문가 협의회를 구성하고 1회 전문가 협의회를 진행하였다.

<표 7 > 전문가 협의회 구성표

구분	성명	소속	직위
상담교육전문가	김동민	중앙대학교	교수
	서영석	연세대학교	교수
	신을진	송실사이버대학교	교수
	김옥진	루터대학교	교수
	김지현	홍익대학교	교수
	임은미	전북대학교	교수
	한기백	서강대학교	교수
	송재홍	제주대학교	교수
	김선경	용문상담대학원대학교	교수

	김장희	인제대학교	교수
	김창대	서울대학교	교수
	장은진	침례신학대학교	교수
	선혜연	건양대학교	교수
	서진경	전주대학교	시간강사
	정원화	한국상담학회	자격연수팀장

<표 8> 전문가 협의회 일정

구분	일시	참가자	내용
1회	2013년 2월14일	김동민 교수등 8명	연구방향 및 향후과제

전문가협의회를 통하여 한국형 상담자교육인증체제를 위한 연구방향과 향후과제에 대하여 제시하였다.

○ 연구방향

- 현장에서 활동하는 상담자(대학원과정이상) 훈련을 위한 체제를 먼저 구축하는 것이 효과적인 것임.
- 학교상담자과정은 이미 인증과정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과는 다른 새로운 체제를 구축할 것인지 고려.
- 실습과정의 표준화작업이 있다면 대학에서 실무를 준비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 함.
- 학회 자격기준 개정 계획(2015년)이 있는데 인증체제가 구축이 된다면 자격기준 심사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 함.
- 상담 교육과정이 개설되지 않은 대학에는 인증체제를 어떻게 적용 할 것인지 고려해야 함.
- 인증체제가 구축이 된다면 학생들 지도에 큰 도움이 되리라 기대 함.
- 지금부터 교육과 실무의 의견들을 충분히 모아서 꾸준히 해나가야 할 작업임

○ 향후과제

- 상담 실무는 대학원석사사이상의 과정 이수자들이 실시하므로 학부과정에서의 인증체제 적용이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고려해야 함.
- 대학에 상담 전공 교수가 3명 이상은 있어야 인증체제구축 적용이 가능 할 텐데 부족교수인원은 어떻게 충당 할 것인지 고려해야 함.

나) 자문단

한국의 상담자교육인증체제 구축과 관련하여 학계 및 상담관련 행정실무, 인증실무자 등 5명을 자문단으로 구성하여 자문을 구하였다.

<표 9> 자문단 구성표

구분	성명	소속	직위
상담학회 이전 회장	김계현	서울대학교	교수
상담학회 이전 회장	김성희	경북대학교	교수
상담학회 현 회장	남상인	순천향대학교	교수
Wee 특입센터 센터장	최상근	한국교육개발원	센터장
공학인증체제 실무자	박동균	전주대학교	과장

<표 10> 자문회의 일정

회수	일시	자문위원	자문내용
1회	2012년 11월 23일	김계현	인증체제 구축 우선 교육과정
2회	2012년 12월 14일	최상근	학교상담인력과 상담교육인증
3회	2012년 12월 28일	김성희	상담분야의 과제와 상담교육인증
4회	2013년 2월 18일	박동균	인증체제구축준비과정
5회	2013년 2월 22일	남상인	한국상담학회 자격과 상담교육인증

각 자문위원의 자문내용은 다음과 같다.

- 김계현 한국상담학회 이전 회장 - 인증체제구축 우선 교육과정
- 현재 한국의 상담자 양성교육과정은 지나치게 다양화되어 있어 혼란과 불신을 낳고 있다
 - 표준화된 상담자양성 교육과정의 수립이 필요하고 이에 교육과정인증은 필수적이다
 - 지금까지 전문상담자는 석사과정 이상의 학력에서 양성하는 것으로 인식하여 어느 정도 교과과정에 대한 연구와 훈련수준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나, 최근 학부에서 상담자 양성이 활성화되고 이들이 상담현장에서 많이 일하게 됨으로 인해 학부에서의 상담자 양성에 대한 모델설정, 교과과정 표준화가 시급하다
 - 실제 인증을 하게될 때 대학원 과정은 각 학교의 사정상 독립전공이나 학과가 아닌 경우가 대부분 이어서 인증에 참여하기가 어려우나 학부는 독립된 학과나 전공으로 운영되고 있어 인증에 참여하기가 쉽다
 - 또한 한국의 대학들은 학부의 지표를 중심으로 운영되므로 학부의 교육과정으로 대상으로 한 인증을 실시할 때 학교에 실제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그러므로 한국의 상담자양성체제 인증은 학부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필요하다.

- 최상근 한국교육개발원 Wee 프로젝트 특입센터장 - 학교상담인력과 상담교육인증
- 현재 학교상담인력으로 참여하는 전문상담사는 다양한 자격과 전공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 일정한

- 상담능력과 지식을 담보할 수 없다
- 학교상담인력의 질적 수준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자격기준이 필요하나 현재의 상담관련 자격들은 이에 활용하기에 적합하지 않다
 - 현재의 전문상담교사, 청소년상담사 등은 나름대로 기준을 설정하고 있으나 학교상담자로서 충분히 기능하기에는 부족하다
 - 학교상담에 적합한 자격을 신설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으나, 그보다 우선시되어야 하는 것은 공적인 상담자 양성과정의 교과과정이 표준화되고 졸업자의 질적 수준이 보장되는 것이다
 - 이를 위해 상담자양성과정 인증체제 구축은 매우 시급한 과제이며, 특히 학교상담분야에 특화된 교과과정에 대한 인증이 필요하다

- 김성희 한국상담학회 이전회장 - 상담분야의 과제와 상담교육인증
- 최근 한국상담학회는 상담의 대중화에는 성공했으나 이제 상담의 전문화가 당면과제로 부각되었다
 - 상담의 전문화를 위해서는 학회에서는 자격증 과정의 수준을 높이고 엄격한 질관리를 해야하겠지만, 그 이전의 각 학교의 상담자 교육과정이 우선적으로 정비되어야 한다
 - 현재 학부, 일반대학원, 특수대학원, 사이버대학 등 다양한 과정에서 상담이 교육되면서 각 과정별 교육내용, 교육수준, 학위별 교육내용과 수준의 차이 등이 문제시되고 있다
 - 각 과정별 상담자 교육모델을 수립하고 상담지식과 상담실무능력의 목표수준을 설정하여 과정간 연계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 이를 위해 표준화된 교육과정을 마련하고 이의 인증체제가 수립되어야 하며, 이 과정에 상담전문가들이 학회를 통해 참여해야 한다.

- 박동균 전주대학교 공학인증 담당과장 - 인증체제구축준비과정
- 공학교육인증체제는 프로그램을 인증하며 교육과정과 학습 성과가 가장 중요함.
 - 평가양식과 자체 평가 보고서를 매년 작성함.
 - 학회의 인준을 받아 별도의 인증기구인 공학 인증원을 설립하였고 교육과학기술부의 대학교육평가협의회에서 평가를 위탁하는 체제임.
 - 한국공학교육인증원이 2013년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공학교육인증기관으로 지정됨.
 - 고등교육인증체제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법인화가 우선이며 교과부의 산하기구로 활동하는 것도 좋을 것 같음
 - 인증기구를 결성하기 위해서는 먼저 대학교육평가협의회와 소통하고 교류하는 작업이 필요함.

- 남상인 현 한국상담학회 회장 - 한국상담학회 자격과 상담교육인증
- 한국상담학회는 2015년부터 새로운 자격체제를 적용할 예정임
 - 새로운 자격체제에서는 각 학교의 상담자 양성과정을 인증하여 그 결과를 기초로 자격응시 자격을 부여할 예정임
 - 이에 각 학위과정별 인증체제의 구축과 운영이 필요함
 - 한국상담학회는 이러한 상담자교육인증체제 개발에 적극 협조할 것임

2. 2년차 연구결과

가. 주요 내용

본 연구는 3년간의 연구로서 2차년도 연구의 목적은 1차년도에 연구한 자료들을 토대로 하여 상담자 교육 인증의 기준을 개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인증모델 및 영역 설정, 교육인증 영역별 인증기준과 상담전공 영역별 인증기준 개발을 목표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 2차년도의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 ▶ 인증모델 및 영역 설정 : 한국형 상담교육 인증의 모델은 최소기준인증형으로 설정하였으며, 인증영역으로는 학과운영, 교육과정, 학생, 교수, 교육환경, 교육성과 등 6개 영역이 선정되었다. 학과운영 영역은 비전과 목표, 운영체계 등 2개 하위영역, 교육과정 영역은 학습목표, 교과목 운영, 실습운영 등 3개 하위영역, 학생 영역은 학생선발, 학생지도, 학생지원, 학과적응 및 직업적응 프로그램 등 4개 하위영역, 교수 영역은 교수확보, 교수업적, 교수개발지원 등 3개 하위영역, 교육환경 영역은 행정체계, 재정지원, 교육시설, 행정 및 교육보조인력 등 4개 하위영역, 교육성과 영역은 교육성과평가, 졸업생진로 등 2개 하위영역으로 구성된다.
- ▶ 교육인증 영역별 인증기준 : 총 6개 영역에 18개 하위영역에 대하여 27개 인증항목을 선정하고 각 항목별로 구체적인 인증기준 안을 마련하였다.
- ▶ 상담전공 영역별 인증기준 개발 : 청소년상담과 정신건강상담 영역을 인증기준 개발대상 전공영역으로 선정하고, 각 자격제도별로 자격, 학과목, 수련 기준 등을 구상하였다.

나. 연구 내용 및 방법

1) 인증모델 및 영역 설정

가) 인증모델 설정

(1) 연구방법

- ① 고등교육 인증 학문별 인증모델 검토
 - 경영학교육(2007 경영학교육 인증기준 및 예비심사 인증신청서 작성 편람)
 - 의학교육(2007 의과대학 인정평가 기준)
 - 간호교육(2012 간호교육인증평가 기준집)
 - 공학교육(2013 공학인증기준)
 - 미국 상담교육(2009 CACREP Accreditation Manual)

② 전문가 협의회

- 학부 상담학과 교수 10명으로 구성된 전문가협의회의 실시
- 전문가 협의회 명단

이름	소속	비고
최태산	동신대학교	
김강희	인제대학교	
가요한	한동대학교	
권해수	조선대학교	
김옥진	루터대학교	
정성진	삼육대학교	
유현실	단국대학교	
홍지영	전주대학교	
김택호	조선대학교	
김인규	전주대학교	

(2) 연구 내용

- 의학교육, 간호교육, 미국의 CACREP는 최적기준인증형 모델 채택
- 경영교육, 공학교육은 최소기준인증형 모델 채택
- 한국의 학부 상담학과 현실을 고려할 때 최소기준인증형 모델이 적합

(3) 연구 결과

한국형 상담교육인증기준의 모델로서 **최소기준인증형**을 채택함

나) 인증 영역 설정

(1) 연구방법

- 기존 한국의 고등교육인증 학문영역의 인증 영역을 비교분석
- 전문가자문회의
- 학부 상담학과 교수 대상 설문조사

(2) 연구 내용

(가) 기존의 교육인증 학문분야 인증영역 비교 연구

① 연구 대상 학문 분야 및 인증관련 자료

- 경영학교육(2007 경영학교육 인증기준 및 예비심사 인증신청서 작성 편람)
- 의학교육(2007 의과대학 인정평가 기준)
- 간호교육(2012 간호교육인증평가 기준집)
- 공학교육(2013 공학인증기준)
- 미국 상담교육(2009 CACREP Accreditation Manual)

② 각 학문 영역별 인증 기준의 특징

㉠ 의학교육 인증체계

의과대학 인정평가 기준은 의과대학 또는 의학전문대학원 체제를 갖고 있는 대학 모두에게 적용되는 기준이다. 따라서 의과대학과 의학전문대학원의 의미를 구분하여 표기하지 않는 경우 의과대학이라 함은 의학전문대학원을 포함한다.

대학운영체계, 교육목표와 교육과정, 학생, 교수, 시설·설비, 졸업 후 교육 등 각 인증항목별로 보고서 기술내용, 권장기준, 우수기준, 참고자료 등을 제시하고 있으며, 의과대학인정평가 규정을 별도로 제정하여 인증관련 조직, 절차, 비용, 보고서작성, 이의신청, 의과대학의 소유권변경 및 폐쇄, 한국 외의 의과대학 인정 등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다.

㉡ 공학교육인증체계

공학교육 프로그램은 공학사를 수여하는 4년 이상의 교육과정으로 구성되어 있고, 8개 기준을 만족하여야 하며, 수요지향 교육 및 성과중심 교육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2004년 제정하여 2012년까지 6차례 개정하였으며, 공학교육 전반적 인증기준과 함께 전공분야별 인증기준을 제시하였다. 전공분야별 인증기준은 각 전공 관련 학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작성되었다. 공학교육 전반에 대해서는 프로그램 교육목표, 프로그램 학습성과 및 평가, 교과영역, 학생, 교수진, 교육과정, 교육환경, 교육개선 등 7개 영역으로 구분하여 영역별 인증기준을 제시하였고, 전공분야별 인증기준에는 적용, 교수진, 교과과정 등 세 영역에 대해서만 기준이 제시되어 타 학문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간략하게 인증기준이 제시되었다.

③ 간호교육인증제도

간호교육인증평가 목적은 간호교육 프로그램이 국, 내외 보건의료 현장에서 요구하는 간호사 역량을 갖춘 학생을 배출 수 있도록 성과 중심 교육체제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프로그램의 개선을 통해 간호교육의 질을 향상시켜야 한다.

비전 및 운영체제, 교육과정, 학생, 교수, 시설 및 설비, 교육성과 등 각 6개 영역에 대하여 인증기준별 인증기준, 세부설명, 비치자료가 제시되어 있으며, 20개의 핵심기본간호술 평가항목 별로 성취목표, 관련선행지식, 필요장비 및 물품, 수행시간이 제시되어 학생들의 간호수행능력수준목표가 매우 상세하게 제시되어있다.

④ 경영교육인증제도

경영학교육 인증은 전통적인 평가방법에서의 등급이나 최우수 또는 우수 등으로 나누는 서열적 구분은 없으며, 정해진 최소기준을 통과할 경우 인증이 부여되는 제도로 대학 간의 불필요한 경쟁을 유발하는 것을 지양한다.

비전, 미션 및 목표, 학습성과 및 평가, 교육과정과 수업, 학생, 교수, 시설 및 교육환경, 교육개선 등 7개 영역에 대한 항목별 인증기준과 함께, 인증신청, 자체평가보고서, 실사단, 후속조치 등 인증관련 절차에 대한 상세한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

⑤ 미국의 상담교육인증제도

상담교육과정을 상담교육 입문과정, 전공별 프로그램, 박사과정으로 구분하여 대하여 인증기준을 제시하였다. 상담교육입문과정 인증기준은 교육환경, 전문적 정체성, 전문실무능력 등 3개 영역으로 나누어지며 교육환경에는 교육기관, 학과, 교수진, 평가 등이, 전문적 정체성에는 교육의 기초, 지식 등이, 전문실무능력에는 슈퍼바이저의 자질과 지원, 상담실습, 인턴십 등이 하위영역으로 분류되어 항목별 인증기준이 제시되어있다. 전공별 프로그램은 중독상담, 진로상담, 임상 정신건강 상담, 결혼 및 부부 가족상담, 학교상담, 대학상담으로 구분되어 각 전문상담영역별로 기초, 상담과 예방 및 개입, 다양성과 옹호, 사정, 연구와 평가, 진단 등의 하위영역을 설정하여 인증기준을 제시하였다. 박사과정은 입문과정의 인증기준과 같은 영역 및 하위영역별로 인증기준을 제시하였다.

인증기준과 함께 인증의 역사와 범위, 인증 정책, 인증 과정, 인증 서류 등을 함께 제시하였다.

⑥ 본 연구의 시사점

- 학문분야별로 인증영역 설정이 다양하므로 한국형 상담교육인증제도에 적합한 인증영역 설정이 필요하다.
- 의학, 간호학의 인증기준 제시와 같이 인증기준 설명, 평가 기준, 비치자료 등을 제시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 공학, 미국의 상담교육인증제도와 같이 필요한 경우 전공영역별로 인증기준을 구분하여 제시할 수 있다.
- 인증기구의 구성, 인증절차, 관련 서류, 기타 행정사항 등에 대한 규정 제정이 필요하다.
- 상담실습관련 세부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③ 각 영역별 인증 영역 및 기준 비교(표 1)

<표 1> 간호교육, 의과대학, 공학교육, 경영대학, CACREP의 인증평가 영역과 평가부문

간호교육 인증평가		의과대학 인증평가		공학교육 인증평가		경영대학 인증평가		CACREP 인증평가				
영역	평가부문	영역	평가부문	영역	평가부문	영역	평가부문	영역	평가부문			
1.비전 및 운영체제	1-1비전 및 교육목표	1.대학운영 체제	1-1 대학의 설립	1. 교육목표	1-1교육목표 설정	1.비전, 미션 및 목표	1-1 비전 및 미션	1.교육환경	교육프로그램 및 학사과정			
	1-2 행정 및 재정		1-2 대학행정 및 운영체제		1-2 교육목표의 공개		1-2 목표 및 장기계획		재정지원			
	1-3 운영 개선		1-3 대학재정	1-3 교육목표 성취도 평가	2-1 일반적 능력분야	교수 및 학생지원정책						
2.교육과정	2-1 구성		1-4 대학발전계획	2-1 학습성과 설정	2-2 경영학적 지식분야	물리적 상담환경 제공						
	2-2 교과목 운영		1-5 개선노력	2-2 학습성과 평가 절차	3-1 교육과정 운영	상담 및 임상정신건강상담 인증 시간 구성						
3.학생	2-3 실습지도	2.교육목과 교육과정	2-1 교육목표와 교육과정의 기본 틀	3. 교과영역	3-1 수학, 기초과학 및 전산학 교육과정 구성	3. 교육과정과 수업	3-2 전공과목수업·인설·배치	2.학 과	학생선발 및 지원			
	3-1 학생 지도		2-2 기초의학 교육과정		3-2 설계교육과정 구성		3-3 인턴십프로그램		전임교수의 인증시간 확보			
3-2 학생 복지	2-3 임상의학 교육과정		3-3 전문교양교육과정 구성	3-4 수업방법	교수의 수 및 지도교수의 역할							
4. 교수	4-1 교수 확보		2-4 인문·사회·의학 교육과정	4.학생	4-1 학생지도체계	4-1 학생선발 및 졸업	4. 학 생		4-2 학생지도체계	교수진 확보 및 자격		
	4-2 교수 업적		2-5 수업방법과 강좌평가		4-2 전임생 적응프로그램	4-2 학생복지제도			교수의 지위 요건			
5. 시설 및 설비	4-3 교수 개발 지원	2-6 학생 학습평가	4-3 졸업생 지원프로그램	5.교수진	5-1 교수진 구성	5. 교 수	4-3 취업 및 졸업생관리	2.평 가	보조교수의 확보			
	5-1 교육 시설 설비	3-1 입학정책 및 학생선발	5-2 교수개발 지원		5-2 교수의 수 및 자격		학생평가 프로그램					
	5-2 학술 정보 지원	3-2 학생지도체계	5-3 교수진의 산업체 및 전문직문업직인과의 유대		6. 시설 및 교육환경		6-1 교육 시설 및 장비		2.전문적 정체성	지 식	사명선언문 요건 및 기준	
	5-3 편의시설	3. 학생	3-3 학생복지 제도 및 시설				6-2 재정체계				6-2 재정지원	강의 요강
			3-4 졸업 후 진로 및 학습성과				6-2 교육시설설비				6-3 행정 및 교육보조	필수과목
4. 교수			4-1 기초 및 임상 전임교수	6-3 재정 확보	7.교육개선	7-1 교육개선	3.전문실무능력 훈련	슈퍼바이저의 자필과 지원			사회적 다양성 관련 교육과정	
	4-2 교수의 연구 및 학술활동	6-4 행정 및 교육보조인력 확보	7-1 개선실적의 지속적 유지	인간의 성장과 발달 관련 교육과정								
6.교육성과	6-1 교육성과 평가	5-1 교육 시설 · 설비	7. 교육개선	7-2 정기적인 분석 체계		협력적인 관계 관련 교육과정			그룹작업			
	6-2 졸업생 지도	5-2 연구 관련 시설 · 설비		8. 전공 분야별 인증기준		전공별 인증기준 충족(별첨)			평가			
		6.졸업후 교육	6-1 대학원교육									연구와 프로그램 평가
					3. 전문실무능력 훈련		슈퍼바이저의 자필과 지원	프로그램 교수진의 자격요건				
								슈퍼바이저 학생의 자격요건				
								일반적인 슈퍼바이저의 자격요건				
								슈퍼바이저의 역할과 의무				
									실습 시간 및 과정적 요건			
									인턴십 수료 요건			
									인턴십 평가			

나) 전문가 자문회의 및 상담학과 교수진 설문조사

① 자문회의

- 일시 : 2013. 8. 8(목)/ 10. 25(금)
- 자문위원 : 1차 - 김강희 교수(인제대학교), 권해수 교수(조선대학교),
2차 - 홍지영 교수(전주대학교)
- 내용 및 결과 :
 - 다양한 학문분야의 인증 영역을 참조하되 상담교육의 독특성을 반영해야 함
 - 전문적 역량 강화를 위해 실습 관련 구체적 기준 제시 필요
 - 미국의 CACREP 영역구분을 한국의 타분야 영역구분에 맞추어 재분류 필요

② 설문조사

- 일시 : 2013. 11.
- 대상 : 대학 상담학과 협의회 소속 교수 20명
- 내용 및 결과 :
 - 연구진이 구성한 인증영역 및 내용에 대한 적합도 설문

학과운영 - 학과의 비전 및 교육목표가 체계적으로 설정되어있는지를 살피기 위해 비전, 운영체계, 운영개선을 살펴보는 영역

교육과정 - 학과의 교육목적 및 목표에 부합하도록 학과 자체적으로 설정한 학습성과와 연계하여 교육과정이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여부를 살피보기 위해 학습목표, 교과목 운영, 실습운영을 알아보는 영역

학 생 - 학생과 관련된 영역으로 학생선발, 학생지원, 학생지도 및 학생의 학과 적응 및 직업적응 프로그램의 내용을 살펴보는 영역

교 수 - 교수와 관련된 영역으로 교수확보, 교수업적, 교수개발지원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영역

교육환경 - 상담교육인증 프로그램이 원활하게 진행되기 위해 적절한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는지를 살피보기위해 행정체계, 재정지원, 교육시설, 행정 및 교육보조인력 구성이 어떠한지를 살펴보는 영역

교육성과 - 상담교육인증 프로그램의 운영이 목표한 학습성과를 도달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교육성과 평가, 프로그램 졸업자의 진로를 살펴보는 영역

- 적합도 정도에 따라 인증영역 및 내용 재구성

(3) 연구 결과

한국형 상담교육인증기준의 영역은 **학과운영, 교육과정, 학생, 교수, 교육환경, 교육성과** 등 6개로 설정함

2) 교육인증 영역별 인증기준 개발

가) 연구 방법

(1) 인증기준 안 구성

- 기초자료 : 4년제 대학 상담학과 교육과정, 상담학과교육과정연구(김인규, 2009c), 미국의 상담교육인증 기준(CACREP), 한국의 타 학문분야 인증기준 및 인증관련 연구물
- 구성 방법 : 기초자료를 토대로 연구진이 인증기준 안을 구성하여 5차례에 걸쳐 검토, 수정

(2) 전문가 협의회

- 전국대학상담학과협의회 소속 10명의 교수로 전문가 협의회 구성(3page)
- 전문가 협의회 실시(2014. 1. 24. 전주대학교 도서관 회의실)
- 인증기준 안에 대한 토의

(3) 델파이 조사

- 전국대학상담학과협의회 소속 60명의 교수에게 설문 배포(2014. 2 현재 수거중)

나) 연구 내용

(1) 한국형 상담교육 영역별 인증기준(안)

상담교육 인증평가의 목적은 상담교육 프로그램이 국내외 상담 현장에서 요구하는 상담자 역량을 갖춘 학생을 배출할 수 있도록 성과 중심 교육 체제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프로그램의 개선을 통해 상담교육의 질을 향상하는데 있다.

1. 학과운영

1.1 비전 목표

학과는 대학 및 지역사회의 특성, 상담 환경 변화, 국내외 상담직에서 요구하는 상담자 핵심역량 등을 반영하여 상담교육 프로그램의 목적과 목표를 설정하여 구성원들이 알 수 있게 공지해야 한다.

1.2 운영체계

- 1.2.1 학과는 상담교육 프로그램에 대하여 기술하고 구성원들이 알 수 있도록 공지해야 한다.
- 1.2.2 학과는 교육기관의 학사학위 수여과정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프로그램에 등록된 학생에 대하여 일차적 책임을 진다.
- 1.2.3 학과는 60시간 이상의 상담전공과목 이수율 졸업요건으로 제시한다.

2. 교육과정

2.1 학습 목표

상담교육 프로그램은 졸업시 학습성과로서 다음의 역량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

- 인간발달과 문화 이해 능력
- 상담이론 및 상담문제 이해 능력
- 상담개입 능력
- 심리검사 이해, 실시, 해석 능력
- 상담자 윤리이해 및 적용 능력

- 행정실무 능력
- 자기성장 및 소진대처 능력

2.2 교과목 운영

- ① 인간발달
 - 인간의 본성과 육구의 발달 수준 이해를 돕는 교과영역
- ② 조력관계
 - 상담이론 및 기법에 대한 이해를 돕는 교과영역
- ③ 검사 및 평가
 - 개인과 집단에 대한 평가와 이해를 돕는 교과영역
- ④ 연구와 통계
 - 상담 연구와 관련한 지식과 실무훈련을 제공하는 교과영역
- ⑤ 실습
 - 상담 기술개발을 위한 상담 실습을 경험하는 교과영역
- ⑥ 기타
 - 위 5개 영역에 포함되지 않는 영역

2.3 실습 운영

- 2.3.1 실습과목과 상담현장체험의 그룹 슈퍼비전은 최대 20명의 학생을 넘기지 않는다.
- 2.3.2 학생은 재학기간 중 최소 120시간 이상의 상담실습과 현장체험을 한다. 각 학생들의 실습과정은 다음을 포함한다.

3. 학생

3.1 학생선발

학과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학생을 선발한다.

- ① 대인관계 능력
- ② 대학과정 수학능력
- ③ 상담관련 진로 목표

3.2 학생지도

학과는 학생의 대학생활 적응과 진로개발을 위해 지도교수제도 등 학생지도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학습, 생활, 진로 등과 관련하여 모든 학생에게 정기적으로 상담과 지도를 제공하고 그 결과를 관리·활용하고 있다. 또한 학생지도를 위한 예산을 확보하고 있으며, 운용·지행한 실적이 있다.

3.3 학생지원

학과는 학생의 대학생활 적응 및 진로개발과 관련하여 장학제도와 같은 지원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3.4 학과 적응 및 직업 적응 프로그램

학과는 학생의 학과 적응과 상담직무에 대한 적응을 돕기 위해 학과 차원에서 학생들을 위한 학과 적응 프로그램 및 재학생 대상 직업 적응 프로그램을 교과목에 정기적으로 실시.

운영하고 있다.

4. 교수

4.1 교수확보

- 4.1.1 전체 학생에 대한 전임 교수의 비율이 40:1을 넘지 않는다.
- 4.1.2 학과에서는 다양한 교수진의 모집, 채용, 유지를 위해 체계적인 노력을 한다.
- 4.1.3 학과는 학과의 임무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역량과 자질이 있는 교수진으로서 다음 조건들을 충족하는 학과 소속 교수를 확보 한다.

- ① 상담자 교육 전담 교수 2명 이상
- ② 상담 전공의 박사학위 소지자
- ③ 담당 영역과 관련한 준비와 경험
- ④ 상담분야 전문학회의 회원으로서, 그리고 전문가 자격을 통한 상담전문가의 정체성
- ⑤ 상담전문가 활동 및 상담분야 전문 학회 활동에 참여

4.1.4 학과는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비전임 교수(예: 객원교수, 산학협력교수, 임상교수)를 채용하여 프로그램의 임무, 목적과 교육과정을 지원할 수 있다.

- ① 상담 및 연관분야 석사 학위
- ② 담당 교육 분야 관련 준비와 경험
- ③ 상담분야 전문 학회 회원, 적합한 자격을 통한 상담전문가의 정체성

4.2 교수업적

- 4.2.1 전임교수의 총 수업시수가 비전임 교수의 총 수업시수보다 많다.
- 4.2.2 교수진의 수업부담은 전문가 양성을 위하여 집중적인 실습지도가 필요한 다른 학과 교수진의 수업부담과 동일하게 한다.

4.3 교수개발지원

학과는 교수들이 교육자와 연구자로서 지속적으로 자기개발을 할 수 있도록 교육 및 연구활동 지원 체계에 관한 근거 규정을 두고 있으며, 교수개발을 위해 행. 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다.

5. 교육환경

5.1 행정체계

교수진과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기에 충분한 행정적 지원이 있으며, 이는 유사 학과에 제공되는 행정적 지원과 같다.

5.2 재정지원

교육기관은 이 프로그램의 학습 환경에 대한 연속성, 질, 효과성을 보장하기 위해 충분한 재정지원을 한다.

5.3 교육시설

교육기관은 학생지도와 수업 준비 및 연구 등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대학 내, 외에 교수실, 강의실과 세미나실 등을 확보하고 운영하여 모델링, 상담시연, 슈퍼비전, 훈련에 도움이 되는 상담교육 환경을 제공한다.

5.4 행정 및 교육보조인력

학과 행정 업무를 위한 학과 사무실을 확보하고 있으며,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행정 및 교육보조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

6. 교육성과

6.1 교육성과평가

프로그램의 교수진은 임무, 목표, 학생의 학습 성과 등의 측정과 결과 등을 포함하여 프로그램에 대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평가를 실시한다. 평가 계획은 다음을 포함 한다.

6.1.1 프로그램, 교육과정, 프로그램 지원자의 특성에 대한 검토

6.1.2 전문가 정체성, 전문적 지식 및 실천 등에서의 학습과 수행에 대한 평가

6.1.3 프로그램의 개정 사항을 포함하여 프로그램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 결과를 문서화한 공식적인 보고서를 작성하여 열람 가능한 형태로 제시

6.2 졸업생 진로

대학은 학부생의 졸업 후 진로를 돕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며, 취업이나 대학원 진학에 대한 적절한 지원체제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2) 전문가 협의회

① 홍지영 전주대학교 교수

- 상담의 전문성. 학문적 특성을 안다면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일로 여겨져 사회복지학과 등을 참조하여야 함.
- 상담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것은 학부수준을 이해하는 경우가 실제적으로는 어렵다. 즉 사회적 요구 역시 고려해야 할 것 같음.
- 학생의 입장에서 선택의 두 가지 track (인증을 통한 실무자, 실무자)을 생각해볼 수 있도록 함.
- 상담실습 현장체험을 고려할 때 16개 대학 참여를 통해 동의를 하는 것도 중요함.
- 기관연계(Wee 센터, 청소년 지원센터)를 통한 실무/실습 인력 배치
- 인증프로그램 이수한 자는 학부수준이어도 인정받도록 고려해야함.

② 최태산 동신대학교 교수

- 인증체제는 학과운영을 비전 목표, 운영체계 총괄평가와 형성평가의 인증 프로그램이어야 함.
- 상담은 학과중심이 아닌 대학원생이 더해야 한다는 규정이 되어 있음.
- 현실적으로는 제도가 미비하지만 인증과정이 중요한 과정이고 통합하는 과정으로 중요한 지표가 됨.
- 전국에 있는 전체 상담학과의 교수가 다 모여 학과운영파트는 전체에 것을 총괄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봄.

③ 유현실 단국대학교 교수

- 학부 졸업자와 대학원 졸업자가 어떠한 역량의 모형으로 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계속 됨.
- 최소전공 트랙과 심화전공트랙으로 나누어서 60시간에 이상의 이수라고 하면 힘든 상황임.
- 학부에서의 교육목표는 상담전문가 양성하는 것으로, 각 대학의 사정에 맞게 자유롭게 커리큘럼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봄.
- 상담전문가나 대학원 진학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의 최소전공 트랙 42학점과 심화전공 트랙 63학점을 요구 하고 있음.
- 교육 환경상담을 사이버로도 배우는데 환경이설에 대한 투자를 한다는 것이 가이드라인 없이는 힘들.
- 인증제라는 것이 강력히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은 시설에 대한 부분인거라고 봄.
- 행정 체계, 재정 지원, 교육시설, 행정 및 교육 보수인력이 나와 있는데, 실제 공학인증이나 간호나 의학에서는 기본적으로 시설들이 있다. 그 시설을 운영하는 인력들도 기본적으로 있다. 교사, 교원자격증 평가를 받을 때 시설에 대한 평가가 있음.
- 조교들이 자기도 훈련받지 않은 비 훈련자들이 오면 자기들도 잘 모르고, 6개월 하다가 1년 하다가 그만 뒤버리면, 교수들이 그것들을 일일이 점검하기가 어려운 실정도 있음.

④ 가요한 한동대학교 교수

- 국가 자격증으로 연간해서 60시간이 정착이 된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라고 봄.
- 교수위원을 체계적으로 많이 양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봄.
- 교수확보 영역에 있어서도 인증제로 갈 때, 교수확보 부분이나 교수 업적 부분도 많이 고민을 해 봐야 함.
- 교수업적은 연구활동과 전문적 활동이라고 볼 때 주로 티칭에 거의 매달리다 보니 상담을 거의 못하게 됨.
- 상담분야가 원래 실천분야이기 때문에 같이 가야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어려워 고려해야 함.

⑤ 권해수 조선대학교 교수

- 대학이라는 곳은 결국 평가 지표에 따라 많이 움직이므로, 신입생을 충원 할 때 재정 상태를 유지하고, 평가 지표를 무시한 상태에서 학과를 운영하기란 어렵다.
- 취업 현장과 맞부딪치게 되기 때문에 학교에서 내려온 지표를 토대로 하교별 차별화 되게 하기 위해 고민임.
- 필수교과목과 그 담에 교과목의 개연성을 제시하고, 명시하는 하여, 현장에서 유용하도록 도와야 함.
- 학교실습실을 요구 할 때 인증 프로그램이 없어서 정책이나 타 기관의 사례를 들어 요구 할 때 역시 한계임.
- 교육과정도 어떤 전문가를 양성할 것인가 고민을 할 때 국가정책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어 표준화프로그램들을 가장 기본프로그램들을 기본이수시간을 가장 필요한 것만 정하고 융통성 있는 부분을 열어둬야 한다고 봄.
- 학과들마다 힘들어하고 중도탈락자들이 많이 일어난다고 했었는데, 정확하게 교정하고 나머지는 학과에 위임을 하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됨.

⑥ 정성진 삼육대학교 교수

- 학부수준에서는 심리검사와 예방상담, 석사수준은 상담 실무자이고, 박사수준은 전문가와 슈퍼바이저라는 수준으로 구분으로 구조화하면 좋을 듯 함.

- ⑦ 김옥진 루터대학교 교수
- 학습영역의 학생선발에 있어서는 학생 수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학생지도에 있어서 인증이 없는 부분도 있고 학생들의 전문성을 함양하는 것과 더불어서 인간성을 인간적인 자질인 전문성과 인간적인 자질 두가지를 봐야 함
 - 대학원에서 전문성을 강조하는 것은 학부에서는 상담전공하고 심리검사도구를 먼저 학부생에게 경험하도록 하여 상담 아닌 다른 분야의 일을 하더라도 집단 상담이 중요하구나! 를 경험하는 것이 필요
 - 보통학점에 대해 평가를 하고 있는데, 학생평가 영역에서도 이러한 것들을 포함해야 함
- ⑧ 김장희 인제대학교 교수
- 인증을 받은 기관들은 학부수준의 학생들이 별개로 자격증을 안 받아도 그 자체로 일할 수 있다는 공식적으로 인증 된다면 의미가 있는데, 얼마나 신빙성이 있을까 하는 생각도 있음.
 - 상담학과 인증연구라는 것이 국가에서 요청 한 것도 아니고 협의에 차원에서 계속 홍보 및 추진할 필요 있음

3) 상담전공 영역별 인증기준 개발

가) 인증기준 개발대상 상담전공영역 선정

- 청소년상담 전문가, 정신건강상담 전문가 등 2개 영역 선정
- 청소년상담은 현재 한국에서 가장 활발하게 상담활동이 이루어지는 상담 대상 및 상담현장이며, 국가자격으로 청소년상담사 자격제도가 시행되고 있음
- 청소년상담사 자격제도에 대한 연구가 지속되면서 공적 상담자 교육과정에 대한 인증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계속되어왔음(서영석 등, 2013, 양미진 등 2012, 이창호 등 2011)
- 정신건강상담은 최근 상담학계의 주요 관심사항으로서 한국상담학회 및 한국상담심리학회는 2013년 5월부터 정신건강상담관련 협의체를 구성하여 대정부 및 국회 관련활동을 전개하고 있음
- 정신건강상담은 기존의 모든 상담관련 활동을 포괄하는 개념으로서 지금까지는 별도의 자격이나 훈련체제가 구축되지 않았으나, 정신건강법이 정신건강증진법으로 개정되는 상황에서 별도의 자격과정으로 수립되어야 할 필요가 제기되고 있음

나) 연구 방향

- 연구대상인 청소년상담 전문가는 현재 국가자격제도로 운영되고 있으며, 정신건강상담 전문가는 행후 국가자격제도로 신설될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이 자격에 대한 교육과정 인증체제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먼저 각 전문가 자격의 업무, 응시자격, 필수수련내용 등이 확립되어야 함
-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각 자격의 바람직한 체제를 구상하여 제시하는 것을 연구방향으로 설정함

다) 청소년상담 전문가

(1) 연구방법

- 현행 청소년상담사 자격제도 검토
- 청소년상담사 자격 개정방안 구성
- 청소년상담사 자격제도 전문가 회의

(2) 연구내용

현재 청소년상담사 자격은 1, 2, 3급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현행 3개급 체제의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며 이를 1, 2급 체제로 변경하는 방안이 논의되어 왔다. 이에 2개급 체제로 변경시의 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가) 청소년상담사 업무

- ① 1급 청소년상담사 : 청소년상담 지도인력으로서 청소년상담 정책 개발 및 행정업무를 총괄하고 청소년상담기관 설립 및 운영을 관리한다. 또한 청소년상담사 2급과 3급 수련종인자의 교육지도와 자문을 하며 청소년의 문제에 대한 개입과 지도, 청소년상담 관련 연구를 수행한다.
- ② 2급 청소년상담사 : 청소년상담 전문 인력으로 청소년상담의 전반적 업무를 수행하고 청소년의 각 문제영역에 대한 전문적 개입을 한다. 심리검사를 해석하고 활용하며 상담행정 업무를 수행한다.

(나) 청소년상담사 응시자격

청소년상담사 2등급 체제의 응시자격은 학위 및 상담관련과목 이수, 상담경력을 중심으로 구분한다.

① 1급 청소년상담사

-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대학 및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에서 상담관련 필수영역에서 각 1과목 이상씩 총 6과목(18학점) 이상, 선택과목 4과목(12학점) 이상을 이수한 사람
- 2급 청소년상담사로서 청소년상담실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대학 및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에서 상담관련 필수영역에서 각 1과목 이상씩 총 6과목(18학점) 이상, 선택영역에서 4과목(12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청소년상담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자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사람

② 2급 청소년상담사

-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대학 및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에서 상담관련 필수영역에서 각 1과목 이상씩 총 3과목(9학점) 이상, 선택과목 3과목(9학점) 이상을 이수한 사람
- 전문학사학위 소지자로서 대학 및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에서상담관련 영역 중 필수과목 3과목 이상(9학점), 선택과목 3과목(9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청소년상담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청소년상담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 제1호 내지 제2호에 규정된 자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여성가족 부령이 정하는 사람

위 내용 중 상담관련 교과목은 다음과 같이 고려한다. 우선 청소년상담관련 교과를 현행 검정과목 구분과 같이 필수과목과 선택과목으로 구분하고, 필수과목을 청소년상담 관련 영역별로 지정한다.

구분	영역	교과목	관련역량
필수	청소년이해	청소년이해, 청소년발달, 청소년상담 등	청소년 이해
	상담이론	상담이론, 집단상담, 심리검사, 상담기법 등	상담지식, 심리검사, 연구 설계 및 수행, 연구보고서 작성 및 평가, 상담자교육 및 슈퍼비전
	상담실습	상담실습, 상담현장실습, 상담현장체험 등	사례관리, 네트워크 구축 및 활용, 자기관리, 의사소통, 일반

			교육연수
	상담실무 (1급에만 해당)	상담윤리, 상담정책, 상담행정 등	윤리, 재무관리, 고객만족, 행정 실무, 리더십, 마케팅, 경영관 리, Followership
선택		가족상담, 진로상담, 학업상담, 중독상담 등	위기관리, 상담전략 및 기술,

현재 제시된 과목명은 대표적인 과목일 뿐이며, 향후 연구를 통해서 각 영역별 인정과목을 세분화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상담실무 과목은 1급에만 적용되는데 이는 관련 과목이 학부에 개설되기 어렵고 대학원 수준에서야 개설될 수 있으며, 2급 수준의 상담실무는 상담실습에서 담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위 영역 중 상담실습 영역은 실습의 내용 및 시수가 구체화될 필요가 있다. 한 학기동안 개설된 3학점 단위 1개 과목을 이수하는 것으로 볼 때 45시간(15주×3시간) 분량의 실습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 내용을 과목 이수가 아닌 수련 내용 확인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1급과 2급 모두 상담행정, 개인상담, 집단상담으로 구분하여 각 영역별로 구체적인 내용과 시수를 제시한다. 1급의 경우 상담행정영역에서는 청소년상담실 행정을 관리하고 행사진행을 관리하는 능력을 갖추기 위하여 행정관리 지원 10시간 이상, 행사관리 지원 5시간 이상의 수련을 한다. 개인상담 영역에서는 청소년 개인상담을 전문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청소년 개인상담 상담자 경험 5회 이상, 슈퍼비전 경험 5회 이상, 개인상담 관련 연수 5시간 이상의 수련을 한다. 집단상담 영역에서는 청소년 집단상담을 전문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청소년 집단상담 지도자 경험 10시간 이상, 집단상담 슈퍼비전 경험 2시간 이상, 집단상담 관련 연수 3시간 이상의 수련을 한다.

2급의 경우 상담행정 영역에서는 1급과 청소년상담실 행정을 수행하고 행사진행 능력을 갖추기 위하여 행정지원 10시간 이상, 행사지원 5시간 이상의 수련을 한다. 개인상담 영역에서는 청소년 개인상담을 수행하는 능력을 갖추기 위해 개인상담 내담자 경험 5회 이상, 청소년 개인상담 상담자 경험 3회 이상, 슈퍼비전 경험 2회 이상, 개인상담 관련 연수 5시간 이상의 수련을 한다. 집단상담 영역에서는 청소년 집단상담을 수행하는 능력을 갖추기 위하여 비구조화 집단상담 참여 10시간 이상, 청소년집단상담 지도자 경험 5시간 이상의 수련을 한다.

	영역	내용	시간
1급	상담행정	• 청소년상담실 행정 관리 지원 10시간 이상 • 청소년상담관련 행사 관리 지원 5시간 이상	15시간
	개인상담	• 청소년 개인상담 상담자 경험 5회 이상 • 청소년 개인상담 슈퍼비전 경험 5회 이상 • 청소년 개인상담 관련 연수 5시간 이상	15시간
	집단상담	• 청소년 집단상담 지도자 경험 10시간 이상 • 청소년 집단상담 슈퍼비전 경험 2시간 이상 • 청소년 집단상담 관련 연수 3시간 이상	15시간
2급	상담행정	• 청소년상담실 행정 지원 10시간 이상 • 청소년상담관련 행사 지원 5시간 이상	15시간
	개인상담	• 개인상담 내담자 경험 5회 이상 • 청소년 개인상담 상담자 경험 3회 이상 • 청소년 개인상담 슈퍼비전 경험 2회 이상 • 청소년 개인상담 관련 연수 5시간 이상	15시간
	집단상담	• 비구조화 집단상담 참여 10시간 이상 • 청소년 집단상담 지도자 경험 5시간 이상	15시간

또한 청소년상담사 자격응시자의 상담실무경험에 대해서 당분간은 교과목 이수로 확인하나 장기적으로는 아래의 기준을 충족하는 수련심사로 전환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각 급별 상담수련경력 년수는 1급은 2년, 2급은 1년으로 하였는데 이는 정신건강 전문요원의 경우 1급은 3년, 2급은 1년의 수련기간을 요구하고 있으며, 상담 전문 학회의 상담자격의 경우에도 1년 내지 2년의 수련기간을 요구하는 것과 유사한 수준을 요구하는 것이다. 수련 내용을 상담경험과 기타 수련요건을 구분하고, 상담경험에 개인상담, 집단상담, 상담행정 등을, 기타 수련요건에 상담관련 각종 연수, 공개사례발표 등을 포함시킨다. 연간 수련시간은 학기당 15주간 주 8시간 수련 받을 경우의 시수(2개 학기*15주*8시간=240)를 기준으로 제시하였다.

급	수련 내용 및 기준	비고
1급	1) 상담수련경력 2년에 해당하는 상담 경험 (1) 개인상담(매년 120시간씩 총 240시간 이상) • 상담자 경험 - 10회기 이상 지속 5사례 포함 (3종 이상 심리검사 활용 5사례 포함) • 내담자 경험 - 지속적인 10회기 이상 상담 • 슈퍼비전 경험 - 5회 이상 슈퍼비전 (2) 집단상담(매년 60시간씩 총 120시간 이상) • 지도자 경험 - 15시간 이상 지속 2집단 포함 • 집단원 경험 - 15시간 이상 지속 비구조화 1집단 포함 • 슈퍼비전 경험 - 5회 이상 슈퍼비전 (3) 상담행정 • 청소년상담실 행정 지원 15시간 이상 • 청소년상담관련 행사 지원 15시간 이상 2) 기타 수련 요건 (1) 상담관련 각종 연수(매년 20시간씩 총 40시간 이상) • 사례발표회 5회 이상 포함 각종 학술대회 및 연구모임 (2) 공개사례발표 • 개인상담사례발표 2사례(각 10회기 이상 지속) • 집단상담사례발표 1집단(15시간 이상 지속)	
2급	1) 상담수련경력 1년에 해당하는 상담 경험 (1) 개인상담 (120시간 이상) • 상담자 경험 - 5회기 이상 지속 3사례 포함 (3종 이상 심리검사 활용 3사례 포함) • 내담자 경험 - 지속적인 5회기 이상 상담 • 슈퍼비전 경험 - 3회 이상 슈퍼비전 (2) 집단상담(60시간 이상) • 지도자 경험 - 10시간 이상 지속 2집단 포함 • 집단원 경험 - 15시간 이상 지속 비구조화 1집단 포함 (3) 상담행정 • 청소년상담실 행정 지원 10시간 이상 • 청소년상담관련 행사 지원 10시간 이상	

	2) 기타 수련 요건 (1) 상담관련 각종 연수 20시간 · 사례발표회 3회 이상 포함 각종 학술대회 및 연구모임 (2) 공개사례발표 · 개인상담사례발표 2사례(각 5회기 이상 지속) · 집단상담사례발표 1집단(10시간 이상 지속)	
--	--	--

(다) 검정과목

새로운 자격체제에서 각 급별 검정과목은 모든 등급에서 필수과목 2과목과 선택과목 2과목으로 구성된다. 1급 청소년상담사의 경우 청소년 상담자 교육과 청소년 심리검사를 필수과목으로 하여 ‘청소년상담 지도인력’으로서 청소년상담사를 교육하고 청소년상담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능력을 평가한다. 선택과목으로는 청소년상담정책과 청소년상담연구 중 1과목을, 그리고 청소년 이상심리와 청소년 위기상담 중 1과목을 선택하도록 구성한다. 이는 1급 청소년상담사가 ‘청소년상담 지도인력’으로서 청소년상담정책을 이해하거나 청소년상담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고, 청소년 위기나 이상심리 등의 문제에 전문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기 위함이다.

2급 청소년상담사의 경우 청소년발달과 청소년상담이론을 필수과목으로 하여 청소년상담에서의 실행인력으로 주된 상담 전문 인력으로 기능할 수 있는 지식을 평가하도록 한다. 선택과목으로는 청소년 집단상담, 청소년 가족상담, 청소년 학업상담, 청소년 진로상담 중에서 2과목을 선택하여 청소년상담을 실제 이끌어가는 핵심인력으로 다양한 청소년문제에 대한 대처능력을 파악하도록 한다.

급	필수과목(2과목)	선택과목(택 2과목)		비고
1급	- 청소년 상담자 교육 - 청소년 심리검사	- 청소년 상담정책 - 청소년 상담연구	택 1	
		- 청소년 이상심리 - 청소년 위기상담	택 1	
2급	- 청소년 발달 - 청소년 상담이론	- 청소년 집단상담 - 청소년 가족상담 - 청소년 학업상담 - 청소년 진로상담		

라) 정신건강상담 전문가

(1) 연구방법

- 정신건강 관련 자격 연구
- 정신건강상담사 자격제도 구상

(2) 연구내용

현행 정신보건법에서 정신보건전문요원으로 규정된 정신보건임상심리사, 정신보건간호사, 정신보건 사회복지사의 자격 규정에 준하여 정신건강상담사의 자격을 구성하였다.

(가) 정신건강상담사의 정의

정신건강상담사라 함은 대학 및 대학원에서 상담관련전공을 이수하여 학위를 받은 자로서 소정의 수련과정을 이수한 후 정신건강상담사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자격증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나) 자격기준

정신건강상담사는 1급과 2급으로 구분하고 각 급별 자격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1급 정신건강상담사는 다음 1~2호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서 상담관련학과(본 협회가 정하는 상담관련 과목을 이수한 경우에 한한다) 석사학위이상 소지자로서 본 협회가 지정한 전문요원 수련기관에서 3년 이상 수련을 마친 자
2. 2급 정신건강상담사 자격취득 후 정신건강시설, 보건소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역사회 정신건강사업을 위탁받은 기관이나 단체에서 5년 이상 정신 보건분야의 상담실무 경험에 있는 자
3. 1항에서 규정한 상담관련 과목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필수과목 (4과목) : 상담이론, 이상심리, 심리평가, 상담연구방법

나. 선택과목(3개 영역에서 각 1개 과목씩 총 3과목)

가) 상담 개입 영역 : 개인상담, 집단상담, 가족상담, 매체상담 중 1과목

나) 인간 발달 영역 : 인간발달, 성격심리, 건강심리, 학습심리 중 1과목

다) 상담 기반 영역 : 상담정책, 상담행정, 상담윤리, 상담자 발달 및 슈퍼비전 중 1과목

다. 위 과목 인정은 수련위원회에 대학원 성적표를 제출하여 이수과목의 적절성을 인정받은 경우에 한한다. 유사과목일 경우, 수련위원회에 해당 과목의 강의계획안을 제출하여 인정 여부에 대한 검토를 필요로 한다

② 2급 정신건강 상담사는 다음 1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에서 상담관련학과(본 협회가 정하는 상담관련 과목을 이수한 경우에 한한다) 학사학위이상 소지자로서 본 협회가 지정한 전문요원 수련기관에서 1년 이상 수련을 마친 자

2. 1항에서 규정한 상담관련 과목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필수과목 (4과목) : 상담이론, 이상심리, 심리평가, 상담연구방법

나. 선택과목(3개 영역에서 각 2개 과목씩 총 6과목)

가) 상담 개입 영역 : 개인상담, 집단상담, 가족상담, 매체상담 중 2과목

나) 인간 발달 영역 : 인간발달, 성격심리, 건강심리, 학습심리 중 2과목

다) 상담 기반 영역 : 상담정책, 상담행정, 상담윤리, 상담자 발달 중 2과목

다. 위 과목 인정은 수련위원회에 대학 성적표를 제출하여 이수과목의 적절성을 인정받은 경우에 한한다. 유사과목일 경우, 수련위원회에 해당 과목의 강의계획안을 제출하여 인정 여부에 대한 검토를 필요로 한다

(다) 자격시험

자격시험은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을 행한다.

(라) 자격시험과목

자격시험과목은 각 급별로 기초과목과 임상과목으로 분류한다.

- ① 1급 정신건강상담사 자격시험 기초과목에는 성격심리, 상담연구방법, 상담정책이 포함되고, 임상과목에는 상담 및 심리치료, 심리평가, 이상심리가 포함된다.
- ② 2급 정신건강상담사 자격시험 기초과목에는 인간발달, 상담윤리, 상담행정이 포함되고, 임상과목에는 상담이론, 심리검사, 이상심리가 포함된다.

(마) 상담사 수련

정신건강상담사 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수련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① 수련기간

1. 수련기간은 1급은 3년, 2급은 1년으로 한다.
2. 수련 과정에서 수련휴식이 연차 간 5년이 초과하는 경우 수련휴식 이전의 수련 경력은 소멸되며, 최장 10년 내에 모든 수련이 종료되어야 한다.

② 수련감독자

1. 수련과정은 수련감독자의 지도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2. 필요에 따라 수련감독자는 타 수련감독자에게 수련과정의 일부를 위촉할 수 있다. 수련감독자는 반드시 1급 정신건강상담사이어야 하지만 위촉 수련감독자는 타 분야의 전문가도 될 수 있다. 다만 타 분야의 전문가인 경우, 심리치료에 한해서 수련시간의 1/3 이내의 수련만 위촉할 수 있다.

③ 수련과정 및 내용

1. 수련과정 및 그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수련생은 수련 받은 그 구체적인 내용을 수련생 수첩에 기재하여야 한다. 수련교육은 1급은 1,000시간 이상, 2급은 300시간 이상을 하여야 한다.
2. 심리치료는 수련감독자의 지도 하에 1급은 300시간 이상, 2급은 100시간 이상의 수련 시간요건을 충족해야한다. 단, 심리치료 이수 시간 중 50%까지는 수련생 개인의 교육분석을 위한 개인치료 및 집단치료에 참여한 경험을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심리치료는 적어도 3회기 이상 심리치료를 지속적으로 시행한 경우에만 인정한다. 접수면접 회기나, 심리평가를 위한 한 회기면담, 단순한 치료 참관은 심리치료 수련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3. 심리치료 사례발표를 1급은 2회 이상(4시간), 2급은 1회 이상(2시간) 해야 한다.
4. 1급은 제 1저자로 기재된 연구논문을 1편 이상 발표해야 한다. 논문은 전국적으로 배포되고 공식적인 심사제도가 잘 확립되어 있는 국·내외 학술지에 발표된 것으로 사례보고(case report), 종설(review article), 간략보고(brief report)도 동등하게 인정한다.
5. 전문상담관련 학회 및 연구회의 학술회의에 30시간 이상, 사례회의에 10시간 이상 참석해야 하며, 연구회의 학술회의 참석은 50%, 사례회의 참석은 100%까지 인정한다.
6. 수련과정 중 수련기관 이외의 병원, 연구소, 학회, 복지기관, 사회복귀시설, 기타 학회가 인정하는 대외협력 지원사업에 30시간 이상 참석하여야 한다.
7. 수련과정 중 1회 이상 정신건강상담사의 윤리교육을 받도록 한다.

3. 3차년도 연구결과

가. 연구 개요

본 연구는 3년간의 연구로서 3차년도 연구의 목적은 1, 2차년도에 연구한 자료들을 토대로 하여 상담자 교육 인증의 절차를 개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상담교육인증을 위한 법적, 행정적, 재정적 필요사항을 살펴보고, 인증절차, 행정사항, 결과처리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교육기관의 인증관련 업무 내용을 개발하였다.

나. 연구 내용 및 방법

1) 상담교육인증의 제도적 필요사항

가) 인증관련 규정 제정

(1) 연구방법

고등교육 인증 학문별 인증규정 검토

- 경영학교육(2007 경영학교육 인증기준 및 예비심사 인증신청서 작성 편람)
- 의학교육(2007 의과대학 인정평가 기준)
- 간호교육(2012 간호교육인증평가 기준집)
- 공학교육(2013 공학인증기준)
- 미국 상담교육(2009 CACREP Accreditation Manual)

(2) 연구 내용

각 주요 학과 인증 관련정관 조문구성 비교는 <표 1>와 같으며, 각 정관의 내용을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한국간호교육평가원, 한국의학교육평가원, 한국공학인증원의 정관은 총칙, 임원, 이사회, 조직, 재산과 회계, 보칙과 같이 6개의 영역으로 나누어져 있다.

총칙은 각 분야의 목적 및 사업 수행으로 구성되어지며, 임원은 각 평가원의 임원 구성과 임무를 맡고, 이사회는 각 평가원의 이사회 구성과 기능으로 운영되고 있다. 조직은 각 영역의 특성에 따라 구분되어지는 데 간호는 평가원의 업무 진행을 위해 상임위원회 및 비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를 두고, 의학은 원장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해 실행위원회를 두고, 공학은 공인원을 회원제로 구성하고 총회가 구성되어 자문협의회 및 운영위원회 기구를 둬으로써 각 평가원의 특성을 찾아볼 수 있다. 재산과 회계는 각 평가원의 재정운영과 관리를 맡고, 보칙은 각 평가원의 정관 규정을 하여 <표 1>와 같이 정관규정을 비교하여 보았다.

이 법률들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① 총 칙: 각 분야의 목적 및 사업 수행

② 임 원: 각 평가원의 임원 구성과 임무

③ 이사회: 각 평가원의 이사회 구성과 기능

④ 조 직: 간호 - 평가원의 업무 진행을 위해 상임위원회 및 비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를 둔다.

의학 - 원장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해 실행위원회를 둔다.

공학 - 공인원은 회원제로 구성하며, 총회가 구성되어 자문협의회 및 운영위원영위원회 기구를

둔다.

⑤ 재산과 회계: 각 평가원의 재정운영과 관리

⑥ 보칙: 각 평가원의 정관 규정

<표 1> 주요 학과 인증 관련정관 조문구성 비교

영역	한국간호교육평가원		한국의학교육평가원		한국공학교육인증원	
제 1장 총칙	제1조	명칭	제1조	명칭	제1조	명칭
	제2조	목적	제2조	목적	제2조	목적
	제3조	간호사업	제3조	의학사업	제4조	공학 사업
	제4조	사무소 소재지	제4조	사무소 소재지	제3조	사무소 소재지
제 2장 임원	제5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제14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제9조	임원
	제6조	임원의 임기	제15조	임원의 선임과 임기	제10조	선임과 임기
	제7조	임원의 선출	제16조	원장의 선임과 직무		
	제8조	임원 결격 사유				
	제9조	이사의 임무	제18조	이사의 직무	제11조	임원의 임무
	제10조	감사의 임무	제19조	감사의 직무		
	제11조	이사장의 직무대행				
	제12조	임원의 해임	제17조	임원의 해임		
제 3장 이사회	제13조	이사회의 구성			제15조	이사회의 구성
	제14조	이사회의 개최				
	제15조	이사회의 소집	제21조	이사회 소집	제17조	이사회의 소집
	제16조	이사회의 의결사항	제20조	이사회의 기능	제16조	이사회의 기능
	제17조	이사회의 개회와 의결 정족수	제22조	이사회의 의결 정족수	제18조	이사회의 의결 정족수
	제18조	의결권 제한	제23조	의결 제척 사유		
			제24조	서면결의		
	제19조	이사회 회의록	제25조	의사록		

- 35 -

영역	한국간호교육평가원		한국의학교육평가원		한국공학교육인증원	
제 4장 조직	제20조	상임위원회	제26조	실행위원회의 구성	제5조	회원
	제21조	교육인증평가위원회 임무	제27조	실패위원회의 기능	제6조	회원자격
	제22조	관정위원회 임무	제28조	위원회	제7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제23조	3년제 기준개발위원회 임무	제29조	사무국		입회와 탈퇴
	제24조	4년제 기준개발위원회 임무			제8조	회원의 정계
	제25조	전문간호사 자격시험위원회 임무				
		비상임위원회			제12조	총회의 구성
		재심위원회 임무				총회의 기능
		조정위원회 임무			제13조	총회의 소집
		특별위원회 임무			제14조	총회 의결 정족수
	제26조	전문위원			제19조	부서 및 위원회(원장산하에 자문협의회 및 운영위원회를 두어 공인원의 제반업무를 수행)
	제37조	조직				
제 5장 재산과 회계	제27조	재산의 구분	제5조	재산의 구분	제20조	재정
	제28조	재산의 관리	제6조	재산의 관리		
			제13조	재산의 사용 및 대여		
	제29조	기금의 설치 및 관리	제7조	기금의 관리		
	제30조	경비의 조달방법	제8조	운영 재원		
	제31조	잉여금의 처리	제9조	잉여금의 처리		
	제32조	수익사업				
	제33조	사업계획서 및 예산·결산	제10조	사업계획 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	제22조	예산 및 사업계획서 등
	제34조	사업보고	제34조	공고 및 공시		
	제35조	임원의 보수	제12조	임원의 보수		
	제36조	회계연도	제11조	회계연도	제21조	회계연도

- 36 -

영역	한국간호교육평가원	한국의학교육평가원	한국공학교육인증원
제 6장 보칙	제38조 정관의 변경	제30조 정관의 변경	
	제39조 해산신고	제32조 해산신고	제23조 해산
	제40조 잔여재산의 처분	제33조 잔여재산의 귀속	
	제41조 청산인		
	제42조 준용 규칙	제35조 준용 규칙	
		제31조 규정 제정	
		제34조 공고 및 공시	

각 인증평가의 목적과 효과는 표 2와 같다.

간호교육평가원의 목적은 간호교육 프로그램이 국내외 보건의료 현장에서 간호사 역량을 갖춘 학생을 배출하여 간호교육의 질을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며, 의학교육평가원의 목적은 의학교육의 질적인 발전과 의학교육기관에 대한 인정평가활동을 수행하고, 해당교육기관의 발전을 자문하여 평가결과를 공포함으로써 사회적 책무성을 담당하고자 하는데 있으며, 공학교육인증원은 대학의 공학 및 교육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기준과 지침을 제시하여 공학 교육의 발전을 촉진하고 실력을 갖춘 공학기술 인력을 배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각 인증평가 결과의 활용방안을 보면 간호교육평가원은 간호교육기관 대상을 활용하여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주고, 대학에 대한 정부의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에 대한 평가·인증 결과를 활용할 수 있으며, 보건복지부 위탁으로 한국간호평가원의 전문간호사 교육과정 지정 및 증원심사에 적극 반영하는 등 다양한 인증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의학교육평가원은 의료법 제 1조(목적)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의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데 목적이 있다”라고 나와 있는 것처럼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건강을 보호받고 질 높은 의료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보장받고 있다. 공학교육인증원은 인증 이수를 통해 학생들에게는 취업경쟁력 우위를 확보하고, 진학 및 자격증 취득 시 유리함을 주고 대학은 지속적인 졸업생의 역량 보장을 통해 경쟁력을 제고하며 우수신입생 유치에 유리하다. 더불어 산업체는 현장 적응력을 갖춘 인재채용을 통해 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며 국가 및 사회에서는 다양한 인재의 육성을 통해 국가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고 있다.

본 연구는 각 인증평가원의 비교를 통해 상담교육인증평가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상담교육인증평가의 목적은 상담현장에서 전문상담사의 역량을 갖춘 인재를 배출할 수 있는 교육체제를 바탕으로 상담교육의 질적인 향상을 추구하여 상담교육의 발전과 대학의 상담교육에 대한 인증의 기준과 지침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에 따른 상담교육인증평가 활용에 대한 인증효과는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첫째, 상담교육인증 이수 과정을 통해 취업현장에서 전문상담가로서의 경쟁력을 갖춘다. 둘째, 상담교육의 질 보장 체제를 확보하고 대학의 경쟁력을 높인다. 셋째, 상담교육인증 학위과정을 운영함으로써 우수한 신입생을 선발하고 진학 및 자격증 취득시 수련과정을 인정한다. 넷째, 상담현장에서 능력있는 글로벌 인재로서 국민 개개인의 심리적 건강을 증진시키고 집단의 정신적 안녕을 도모하여 국가발전에 도모할 수 있다.

<표 2> 인증평가의 목적과 효과

인증평가의 목적	간호	간호교육인증평가의 목적은 간호교육 프로그램이 국내외 보건의료 현장에서 요구하는 간호사 역량을 갖춘 학생을 배출할 수 있도록 성과 중심 교육 체제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프로그램의 개선을 통해 간호교육의 질을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있다. - 간호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자율적인 질 관리 체제 구축 - 국제수준의 간호인력 양성에 대한 간호교육 프로그램 책무성 제고 - 간호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신뢰성 있는 정보 제공 -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간호교육의 질 보장 체제 확보
	의학	의학교육의 질적인 발전과 의학교육의 수월성을 추구하기 위하여 의학교육기관에 대한 인정평가활동을 수행하고, 해당교육기관의 발전을 위한 자문을 하며, 평가결과를 대외적으로 공표함으로써 의학교육의 질적인 향상을 추구하고 사회적 책무성을 담당하고자 한다. - 의과대학의 교육여건과 교육과정의 질적 수준에 대한 표준을 설정함으로써 국가적인 의학교육의 표준화를 이룩한다. - 의학교육의 질적인 향상을 위한 평가 기준과 준거들을 개발함으로써 의과대학 교육의 수월성을 이룩한다. - 의과대학 스스로 자체평가를 통해 대학의 장점과 가치를 발견하고 단점을 개선하도록 한다. - 의과대학의 교육여건과 교육과정 개선을 위한 조언과 협력을 제공함으로써 의학교육기관의 다양화, 특성화, 효율화를 이룩한다. - 의사를 양성하는 의학교육과정의 사회가 원하는 의료인을 양성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준다.
	공학	공인된 인증의 기본방침은 대학의 공학 및 관련 교육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기준과 지침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인증 및 자문을 시행함으로써 공학 교육의 발전을 촉진하고 실력을 갖춘 공학기술 인력을 배출하는데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인증의 목적은 다음의 4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 인증된 프로그램을 이수한 졸업생이 실제 공학 현장에 효과적으로 투입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음을 보장한다. - 해당교육기관이 인증 기준에 부합되는지의 여부와 세분화된 공학 교육 프로그램이 인증 기준에 부합되는지의 여부를 식별한다. - 공학 교육에 새롭고 혁신적인 방법의 도입을 장려하며, 공학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고 이에 대한 자문에 응한다. - 공학교육의 발전을 촉진하고 산업과 사회가 필요로 하는 실력을 갖춘 공학기술 인력을 배출할 수 있도록 기여한다.
인증평가의 효과	간호	■ 간호교육기관 대상 활용 - 간호사 국가시험 응시자격 : 인증을 받은 대학 및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에게 부여함/* 의료법 제7조 (2012. 2. 1 개정) 참고 - 대학에 대한 정부의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에 평가·인증 결과를 활용할 수 있음/* 고등교육법 제11조의2(평가) - 보건복지부 위탁으로 한국간호평가원의 전문간호사 교육과정 지정 및 증원 심사에 적극 반영함. ■ 수요자 대상 공개 - 일간지, 간협신보, 대학신문, 교수신문 등에 인증 대학 목록소개 - 전국 고등학교 입시안내 자료로 인증 대학 목록소개 - 300병상 이상 병원에 인증 대학 목록 공개 ■ 한국간호평가원 사업 참여 - 인증대학 소속 교수 적극 활용 ■ 국제교류 - 미국, 캐나다, 호주 등 국제간호협회에 인증 대학 목록 공개
	의학	의료법 제 13조(목적) 이 법은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의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데 목적이 있다.
	공학	■ 학생 - 수요 지향 교육 이수를 통한 취업경쟁력 우위확보/ - 국가 간 학위의 등가성 확보를 통한 해외취업, 진학 및 자격증 취득시 유리 ■ 대학 - 지속적인 강의 품질 개선을 통해 졸업생의 역량 보장을 통한 대학의 경쟁력 제고 - 인증 받은 학위과정 운영을 통해 우수 신입생 유치에 유리 - 글로벌 스탠더드를 준수하는 교육체계 구축을 통해 해외 유학생 확보에 유리 ■ 산업체 - 창의성과 현장 적응력을 갖춘 인재 채용을 통해 기업의 경쟁력 향상/ - 신입사원 재교육을 위한 시간 및 경비절감 ■ 국가 및 사회 -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공학교육인증제 후원을 통해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다양한 인재 공급 - 산업체를 포함한 사회에서 요구하는 다양한 인재의 육성을 통해 국가 경쟁력 강화

(3) 연구 결과
위 연구 내용을 기초로 하여 한국형 상담교육인증의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발하였다.

한국상담교육인증원 정관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법인의 명칭은 "한국상담교육인증원"이라 하고, 영문표기는 "Korean Accreditation Board of Consulting Education"로 한다.

제2조(목적) 인증원은 사회가 요구하는 능력있는 상담사 양성과 상담교육의 발전을 목적으로, 상담교육 발전과 상담 교육 전반에 걸친 인증평가 사업과 제시한 기준에 따라 인증 및 인증자문을 시행함으로써 상담 교육 전반에 관한 통합적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서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시행한다.

제3조(사업)

① 인증원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1. 상담교육인증에 대한 정책, 절차, 기준에 관한 사항
- 2. 최소인증기준에 부합하는 교육기관 식별에 관한 사항
- 3. 세분화된 상담교육 프로그램의 식별에 관한 사항
- 4. 상담 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장래 발전에 관한 사항
- 5. 상담 교육의 발전 및 촉진에 관한 사항
- 6. 상담 교육발전과 인증을 돕기 위한 자문에 관한 사항
- 7. 상담교육과 관련된 공공 목적의 평가에 관한 사항
- 8.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 각 호에 규정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4조(사무소) 평가원의 사무소는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141"에 두며,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필요한 곳에 지부, 지원시설 지부를 둘 수 있다.

제 2 장 임 원

제5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 ① 임원의 종류와 정수는 다음과 같다.
- 1. 이사장 1인
 - 2. 원장 1인
 - 3. 이사 20인 이내(이사장, 원장을 포함한다)
 - 4. 감사 2인
 - 5. 고문 2인

② 임원은 비상임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일정한 수의 임원을 상임직으로 할 수 있다.

제6조(임원의 임기)

-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이사의 임기는 해당직위 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 ② 임원의 임기 중 결위된 때에는 결위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보선하고, 보선된 임원의 임 기는 전 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③ 임기가 만료된 임원의 후임자는 임기만료 1개월 이전에 선임하여야 한다.

제7조(임원 선출)

- ①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이사 중에서 선출한다.
- ② 원장은 공모하여 원장후보추천단에서 추천하고 이사회 인준을 얻어 위촉한다.
- ③ 이사의 선출은 이사 임기 만료 1개월 전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 ④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 ⑤ 원장 추천단은 당연직 이사로 구성하며 재적이사 과반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임원 결격 사유) 임원의 결격사유는 다음과 같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정관 또는 규정에 위반하여 인증원의 명예를 훼손시킨 자
5. 고의 또는 과실로 인증원에 중대한 손실을 초래한 자
6. 기타 사유로 인하여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자

제9조(이사의 임무)

- ① 이사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이사회를 대표한다.
 2. 원장은 인증원을 대표하며 인증원의 업무를 총괄한다.
 3.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② 상임임원은 다른 직을 겸할 수 없다.

제10조(감사의 임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 ① 인증원의 재산상황과 재정집행 상황에 대한 회계 감사
- ②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 ③ 제1호 및 제2호에 대한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한다.
- ④ 제3호에 대한 시정 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 ⑤ 법인의 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이사회 또는 대표자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11조(이사장의 직무대행)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원장이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한다.

1. 정관 또는 규정에 위반하여 상담인증원의 명예를 훼손하였을 때
2. 고의 또는 과실로 상담교육인증원에 중대한 손실을 초래했을 때
3. 기타 사유로 인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

제 3 장 이 사 회

제13조 (이사회 구성)

- ① 인증원 이사는 이사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 ②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제14조(이사회 개최) 이사회는 제5조 제1항의 자로 구성하며 정기 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정기 이사회는 상·하반기 각 1회씩 연2회 소집하고, 임시 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개최할 수 있다.

제15조(이사회회의 소집)

- 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1. 정기이사회를 개최하여야 할 시기가 도래한 때
 2. 이사장 또는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3. 재적이사 과반수의 요청이 있는 때
 4. 감사의 감사결과 보고를 위한 요청이 있는 때
-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개최 7일전에 회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와 감사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는 부득이한 사유로 임시이사회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6조(이사회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사업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임원의 선임과 해임에 관한 사항
4. 업무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인증의 재심에 관한 사항
6. 제 규정의 인준에 관한 사항
7. 기타 인증원의 목적사업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7조(이사회회의 개최와 의결 정족수)

- ① 이사회는 정관이 정하는 규정을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한다.
- ②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8조(의결권 제한) 이사가 아래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결권을 제한한다.

1. 인증원의 소송의 개시 및 해결에 관하여 자신이 직접 관계되는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자신이 직접 관계되는 사항
3. 임원 선임 및 해임에 있어 본인과 관련된 사항

제 19조(이사회 회의록)

- ① 이사회장은 이사회의 회의에 관하여 회의록을 작성, 비치한다.
- ② 이사회 회의록에는 당해 출석이사 중 기명날인 이사로 선출된 2명의 이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 4 장 재산 및 회계

제 20조(재산의 구분)

- ① 인증원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 ② 기본재산은 설립할 때의 재산과 설립 후에 취득한 각종 재산 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하기로 의결한 재산으로 한다.
- ③ 보통재산은 제2항에서 규정한 기본재산 이외의 모든 재산으로 한다.

제21조(재산의 관리)

- ① 인증원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담보제공 및 용도변경 등의 처분을 하거나, 기본재산에 대한 의무부담 또는 권리포기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의 유지, 보존 및 기타관리에 관하여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2조(기금의 설치 및 관리)

인증원의 특수한 목적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기금을 설치할 수 있으며 기금의 조성과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23조(경비의 조달방법) 인증원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재산의 과실, 사업수익, 응시수수료, 상담교육기관 인증평가 및 전문상담사 교육기관 지정 심사 등에 대한 수수료, 교육연수 및 출연금, 기타의 수익금으로 조달한다.

제24조(잉여금의 처리) 매 회계 연도 결산 잉여금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다음 해 운영비 또는 제22조에 의한 기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제25조(수익사업)

- ① 인증원은 제2조의 목적과 제3조의 사업목적에 달성하는데 필요한 한도 내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 ② 수익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에 관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한다.

제26조(예산 및 사업계획서)

- ① 당해 연도 사업실적 및 수지 결산서는 회계 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 ② 인증원은 매 회계 연도 개시 전에 다음 회계 연도에 실시할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서를 수립·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과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7조(임원의 보수) 상임임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한다.

제28조(회계 연도) 인증원의 회계 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한다.

5 장 조직 및 운영

제29조(조직)

- ① 상담교육인증원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 ② 사무국의 직제에 관한 사항과 직원의 임용, 승진, 보수, 복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 따로 규정한다.

제 6 장 보 칙

제30조(정관의 변경) 인증원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과 승인이 있어야 한다.

제31조(해산신고) 인증원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2/3 이상의 찬성결의가 있을때는 해산한다.

제32조(잔여재산의 처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에 기증한다.

제33조(준용 규칙) 이 정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민법 중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하며 기타는 일반관례에 의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본 정관은 허가를 받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 ② (임원의 임기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개정정관 시행되기 전에 선임된 임원은 종전 정관의 임기조항의 적용을 받는다.

2) 교육인증 절차 개발

가) 연구 방법

- (1) 자료 조사
- 고등교육 인증 학문별 인증규정 검토
 - 경영학교육(2007 경영학교육 인증기준 및 예비심사 인증신청서 작성 편람)
 - 의학교육(2007 의과대학 인정평가 기준)
 - 간호교육(2012 간호교육인증평가 기준집)
 - 공학교육(2013 공학인증기준)
 - 미국 상단교육(2009 CACREP Accreditation Manual)

(2) 자문 회의

차수	일시	내용	자문자
1	2015. 2. 24	학회, 학교에서 교육인증 활용방안	김창대 한국상단학회장
2	2015. 2. 14	인증기준 구성, 인증결과 활용, 인증관련 부처, NCS와의 연계	김계현 서울대학교 교수, 반신환 한국상단학회 자격연구위원장, 김동민 서울경기상단학회장, 김희대 비전상단연구소장, 황진태 우리누리 대표, 남아란 한국상단학회 자격연구팀장
3	2015. 3. 3	간호인증의 구성과 절차	전주대학교 간호학과 심정하, 조은영 교수
4	2015. 3. 10.	인증결과 활용, 전문가 격과 관계, 교육인증의 의미	오인수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유형근 한국교원대학교 교수, 서영석 연세대학교 교수, 김소아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원
5	2015. 3. 13	인증체계 홍보, NCS와의 연계방안, 인증기구 설립방안, 인증시범실시 대상	하혜숙(방송대 청소년교육학과), 황매향 교수(경인교대 교육학과), 여태현 교수(경인교대 교육학과), 김지현(홍익대 교육학과), 윤경희(경남대), 강지현(동덕여대 아동학과), 김재철(한남대 교육학과), 임진영(청주교대 초등교육학과)

나) 연구 내용

- (1) 기존의 타 학문 교육인증 절차 비교

<표1> 주요학과 인증절차 및 비용 비교

구분	한국간호교육평가원	한국공학교육인증원	한국경영교육인증원	CACREP
과정	①평가·인증 실시 공고 ②평가·인증신청서 제출 ③자체평가 설명회 ④대학의 자체평가보고서 작성, 제출 ⑤평가위원 위촉 및 연수 ⑥서면평가 ⑦현지 방문평가 (대학의 보충 자료 제출) ⑧평가결과보고서 제출 ⑨평가결과 조정 ⑩평가결과 판정 ⑪평가결과 의결 (이의신청) (재심판정) (재심의결) ⑫평가·인증 결과 확정 및 공표	①인증평가 신청 선정 ②평가단 구성 ③자체평가보고서 제출 ④서면평가 ⑤방문평가 ⑥7일대응서 제출 ⑧논평대응서(30일대응서)의 제출 ⑨인증평가 ⑩인증판정의 확정 및 결과 통보	①인증신청서 제출 및 예비심사 결과 통보 예비심사 인증위원회에 인증신청서를 제출 → 예비심사 인증위원회는 인증심사를 위한 최소한의 자격을 갖추었는지 판단하는 예비심사진행 결과 통보 ②자체평가보고서 제출 및 실사단 서류 심사 자체 평가보고서 작성제출 → 4명의 실사단 구성 → 실사단은 자체 평가보고서 검토, 보완요구 → 승인 → 해당 교육기관에 현장실사 준비토록 통보. ③교육기관 실사 및 방문 보고서 제출 실사단의 실사 수행 → 실사단 방문보고서 작성 → 실사단이 합의한 최종 방문보고서 및 인증 여부와 인증조건에 대한 제안서를 대외비로 위원회에 제출 ④인증 여부 및 인증조건 결정 인증위원회의 결정, 해당 교육기관에 통보 ⑤교육기관의 이의 제기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이사	①프로그램에서 자기평가서 제출, CACREP 운영진 검토 ②CACREP 1차 검토위원회의 검토(6-8주 정도) ③1차 검토 보고서를 프로그램으로 송부 ④현장방문이 필요할 경우 프로그램이 CACREP 추천위원중 방문위원을 선정, 방문일정 협의(최소한 방문 12주 전) ⑤CACREP는 현장방문위원 소집, 팀구성. 프로그램은 추가사항을 4부 제출 ⑥프로그램은 현장방문 준비 ⑦현장방문(대개 일요일 저녁에 시작, 수요일 오전에 마침) ⑧현장방문 팀은 보고서 작성하여 CACREP 사무국에 제출(현장방문 후 2주 내) ⑨CACREP은 기관장에게 보고서 송부

			회에 이의제기 가능	⑩ 프로그램은 기관차원의 반응 보고서 제출(30일 이내) ⑪ CACREP은 1월이나 7월에 열리는 Board of Directors 회의 자료 준비. 각 프로그램은 회의 45일 전 자료 제출 ⑫ CACREP Board of Directors에서 인증여부 결정 ⑬ 회의 후 30일 이내에 최종결정 안내문 송부
비용	평가원 평가·인증 시행 및 유지를 위해 필요한 적정 수수료를 정하여 공지	<그림 1>참고	- 예비심사비: 3,000,000 (공통) - 인증심사비: 20,000,000 (전임교수 1~20명) 25,000,000 (전임교수 21~40명) 30,000,000 (전임교수 41명 이상)	<그림 2>참고

- 47 -

EAC, CAC 인증신청비

(단위 : 만원)

년도	신규평가 및 NGR		중간평가		인증유지비		서면평가비
	대학	프로그램	대학	프로그램	대학	프로그램	
2009	350	350	350	350	40		
2010	350	350	350	350	40		
2011	350	350	350	350	40	40	200
2012	450	450	350	350	50	50	200
2013	450	450	350	350	50	50	200

ETAC 인증신청비

(단위 : 만원)

년도	신규평가 및 NGR		중간평가		인증유지비		서면평가비
	대학	프로그램	대학	프로그램	대학	프로그램	
2010	350	350	350	350	40		
2011	350	350	350	350	40	40	200
2012	350	350	350	350	40	40	200
2013	450	450	350	350	50	50	200

<그림 1> 한국공학대학교육인증원 인증비용

인증심사 신청비 (최초 신청 시에만 적용)

해당 프로그램은 자기평가서 제출시 납부

박사과정 프로그램:	\$2,500
인턴쉽 프로그램:	\$2,000
박사후 전문가 프로그램:	\$2,000

현장 방문 비용

현장 방문 후에 해당 프로그램 앞으로 청구됨

(2009 현장 방문시)	\$1,500/방문자 1인
(2010 현장 방문시)	\$1,700/방문자 1인

박사과정 프로그램:	방문자 3인
인턴쉽 프로그램:	방문자 2인
박사후 전문가 프로그램:	방문자 2인(전통적, 전공 실천 프로그램): 통합적 실천 프로그램은 방문자가 추가됨

매년 인증 비용

매년 여름에 해당 프로그램으로 청구됨

박사과정 프로그램:	\$2,500
인턴쉽 프로그램:	\$2,000
박사후 전문가 프로그램:	\$2,000

<그림 2>CACREP 인증비용

(2) 자문회의

가. 1차 자문회의

일시 : 2015. 2. 24 화 11:00-13:00

장소 : 한국상담학회 사무국

참석자 : 김창대 한국상담학회장, 김인규 교수

자문내용 :

- 한국상담학회 전문상담자 자격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도 교육과정인증 필요
- 서울대학교 교육상담 대학원에서 실습학점 개설하고 이수하되 실제 실습은 대학원 4개 학기중 어느때 에라도 실습요건 채우도록 함
- 올해 내 몇 개 학교만이라도 인증 시범적으로 해보는 것이 향후 발전에 초석이 될 것임
- 인제대학교 서민원 교수가 인증관련 업무에 도움 줄 수 있음
- 학부 인증체제는 대학원 인증체제와 함께 가는 것이 필요

나. 2차 자문회의

일시 : 2015. 2. 14 화 19:00-21:00

장소 : 송수사일식

참석자 : 김계현 서울대학교 교수, 반신환 한국상담학회 자격연수위원장, 김동민 서울경기상담학회장, 김희대 비전상담연구소장, 황진태 우리누리 대표, 남아란 한국상담학회 자격연수팀장, 김인규 교수

자문내용 :

- 인증기준에 수요자(학생, 상담기관)의 만족도 평가 비중을 크게 하는 것이 현재 다른 평가체제의 흐름과 맞다. 상담센터로 대학생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의뢰가 많은데 이는 학교가 수요자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임.
- 취업률도 크게 반영해야 한다. “연세대면 다냐 백수인데”라는 말의 의미 반영.
- 서비스 인증 우수기업 평가기준 활용 필요.
- 인증결과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명확하게 하고 시작해야 한다. 대학평가의 경우 구조조정, 대학지원 등에 활용한다는 계획이 있기에 강제성 발휘할 수 있다.
- 인증주체가 누구인가가 명확해야 한다. 사범대 평가의 경우 교육부가 권한을 가지고 진행하기에 효과 있다.
- 상담관련 자격취득 조건의 차별화를 만들어서 인증된 학과를 졸업하면 자격취득에 필요한 요건을 인정받도록 하는 안 추진 필요
- 의료는 설립시 인증되어야 가능할 것임. 교육부, 보건복지부도 함께 등록, 인증 받아야 할 것임. 현재 전주대의 간호교육 인증은 설립시 제출한 교육과정 확인 차원의 인증일 것임.
- 교육과정이 인증체제에 들어오려면 비용, 시간 면에서 타당한 근거를 제공해주어야 함
- NCS의 지향이 교육인증이므로 NCS와의 연계를 추진하는 것이 필요
- 현재 NCS는 상담분야가 대분류, 심리상담이 중분류, 심리상담지원이 소분류 등으로 진행되어 가고 있음
- 사회문화복지 분야 전문가 위원회가 발족되면 여기에서 NCS 담당하게 될 것임
- 여러 가지가 잘 맞추어 가면서 상담교육인증을 통해 현재 난립한 민간자격증을 정리하는 방향으로 가야 함
- 정부 측 입장도 여러 자격증을 통합, 정리하는 것을 선호함. 상담교육인증을 통해 이런 일을 해 나갈 수 있음.
- 인증기구 설립시 학계대표, 산업계대표, 교육부 관계자 등이 참여해야 하며, 중립적 인사가 위원장을

말아야 한다

- 상담전공 대학원협의회 형식의 단체가 만들어져서 학부수준과 대학원 수준에 대한 논의 및 협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다. 3차 자문회의

일시 : 2015. 3. 3 화 19:00-20:00

장소 : 예수병원

참석자 : 전주대학교 간호학과 심정하, 조은영 교수, 상담심리학과 김인규 교수

자문내용

- 간호인증은 최근에 실시하기 시작하였으며 1주기 평가에는 몇 개 학교만이 참여했다
- 관련 법과 제도가 변경되어 간호사 국가자격 시험응시를 위한 조건으로 인증평가 평가가 포함되어 지금은 모든 학교가 이를 받아야 한다
- 처음에는 서울대학교 등 서울의 유명대학들이 인증체제에 반발했었다.
- 이에 따라 학교에서도 교수 충원, 실습 장비 구입, 실습요건 충족 등 필요사항을 채워주고 있다
- 간호학과는 프로젝트 등을 통해 학교에 수익을 내주는 학과는 아니지만 간호사 국가자격증 합격이라는 명분으로 인해 학교가 지원해줄 수 밖에 없다
- 상담도 처음에 몇 개 학교만이라도 인증을 시작해서 점차 많은 학교가 참여하도록 하고 궁극적으로 법적 강제력을 갖도록 할 필요가 있다.
- 인증에 필요한 자체평가서는 각 학교마다 양식을 만들어 사용하고 있다
- 학과 전체적인 목표와 각 과목별 목표, 학생들의 달성수준 평가요목 등이 행렬로 제시된다
- 실습에 필요한 경비는 학생들이 실습비 명목으로 등록금에 포함되어 납부하며 이는 전액 학과로 내려와서 실습시설 및 재료 구입, 현장 지도자 사례, 실습기관 사례 등에 사용된다.
- 행정조교 외에 실습조교, 행정직원 등이 별도로 배치되어 있다
- 20개의 핵심기초간호술 평가항목이 평가지침에 포함되어 학생들의 수행능력 향상이 각 과목을 통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어야 한다
- 인증초기에는 간호기술습득 수준을 아주 기초적인 수준으로 개괄적으로만 보았는데 이제는 실제 수행능력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어야 한다
- 여러 평가영역 중 어떤 부분을 보여줄 것인지는 학교마다 다를 수 있다.
- 정성평가 배점이 높아 학교간 객관적 지표 비교는 어려울 수 있다

라. 4차 자문회의

일시 : 2015. 3. 10. 금 16:00-18:00

장소 : 한국교육개발원

참석자 : 오인수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유형근 한국교원대학교 교수, 서영석 연세대학교 교수, 김소아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원, 김인규 전주대학교 교수

회의 내용

- 인증 프로그램 이수자에 대한 이익이 보장되어야 한다.
- 현재 이익이 보장되지 못한다면 향후 학회나 협회가 어떻게 그런 이익을 보장해 나갈것인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
- 국가자격제도 마련, 인증학과졸업자에 대한 국가자격 응시조건 인정, 상담직의 전문직으로서의 위상 확립, 학부에서의 상담학과 위상 정립 등의 비전이 제시될 수 있다.
- 서울대학교를 비롯한 서울지역의 대학에 상담학과가 개설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 현재 학부 상담학과들의 입시경쟁률, 취업률 등 각종 지표를 산출하여 상담학과 개설의 필요성과 타당성, 효과성 등을 각 대학에 설득할 수 있는 자료를 작성할 필요가 있다.
- 먼저 상담 현장에서 인증에 대한 요구가 있어야 인증체제가 잘 구축될 수 있다. 지금은 학교 쪽에서 먼저 연구하고 필요성을 제기하여 순서가 뒤바뀌었다.
- 청소년상담사, 전문상담교사, 학회의 전문상담사 자격제도 연구에는 항상 상담교육인증에 대한 요구가 있어왔다. 단지 그 요구가 강하게 드러나지 않았고, 현실적으로 인증체제 도입해도 각 대학이 이를 수용할 준비가 되어있지 않기에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 인증교육을 필요로 하는 현장의 요구가 반영되어야 한다.
- 별개의 프로세스와 필요하다.
- 학교가 실습 프로그램을 충분히 제공하지 못하기에 최근 열정페이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 학생들은 학교 내에서 실습 프로그램을 충분히 만들어 달라고 요구한다
- 학회가 자격증을 주면서 이를 위한 준비기반을 마련하지 못한 것이 문제다
- 한국은 수련생의 요구와 학교교육 측의 요구라는 이중적 요구에 시달리고 있다
- 상담교육인증의 의미가 크다. 올해 시범적 운영할 때 치밀한 구상이 필요하다. 좋은 출발점이 될 수 있다.

마. 5차 자문회의

일시 : 2015. 3. 13. 금 18:00-20:00

장소 : 계룡스파텔(대전광역시 유성구)

참석자 : 하혜숙(방송대 청소년교육학과), 황매향 교수(경인교대 교육학과), 여태철 교수(경인교대 교육학과), 김지현(홍익대 교육학과), 윤경희(경남대), 강지현(동덕여대 아동학과), 김제철(한남대 교육학과), 임진영(청주교대 초등교육학과), 김인규(전주대 상담심리학과)

회의내용 :

- 상담교육인증은 상담에 대한 인식제고, 자격증의 질 향상을 위해 매우 필요한 일이나 현실적으로 각 대학과 대학원의 상황이 인증을 받을 만큼 충실하지 못한 것을 고려해야 한다.
- 상담실습을 지도할 수퍼바이저의 부족이 가장 큰 문제일 수 있는데, 이는 원격 수퍼비전 시스템을 활용하여 타 지역, 타 대학의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면 어느정도 해결할 수 있다.
- 인증에 참여할 동기부여를 위해서 현재 진행 중인 NCS 를 활용하여 국가자격으로서의 상담사 자격을 만들어야 한다.
- 인증참여를 위한 비용과 투자를 학교가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상담학과와 여러 지표가 향상되어야 하고, 특히 입시경쟁률과 취업률이 학교에 도움이 된다는 설득을 할 수 있어야 한다.
- 상담의 전문성, 상담의 효과, 상담자격의 의미 등에 대한 대국민 홍보가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 상담교육 인증을 위한 기구를 독립적으로 설립해야 한다. 타 학문분야 인증의 경우에 평가원 내지 인증원의 형태로 진행하고 있다.
- 인증기구에는 학계, 산업계, 행정계 등이 참여해야 하며, 학계에는 상담학과 뿐만 아니라 중요 상담관련 학회 내지 협회가 참여해야 한다.
- 산업계로는 학부출신 상담자들이 일하고 있는 청소년상담계, 아동상담계, 학교상담분야 등이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 행정계로는 대학교육협의회, 한국고등교육평가원 등이 참여할 수 있다.
- 인증기구의 대표 내지 위원장은 상담계의 원로급으로 여러 세력간 조정을 할 수 있는 인물이어야 한다. 서울대학교 김계현 교수 추천.
- 60여개의 상담학과가 있는데 이중 상담만을 정체성으로 삼고 있는 4년제 오프라인 대학 15개 정도를 우선적인 인증대상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

- 나머지 대학은 다른 기준을 개발하여 인증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현재 이 연구에서 제시한 인증기준은 하나의 참고자료일 뿐이고 인증기구가 만들어지면 거기에서 다시 인증기준을 수립하여야 한다.
- 사이버대학, 전문대학에 대한 기준도 수립할 것인지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
- 대학원과의 연계를 고려해야 한다. 대학원 상담교육인증은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상담학계 차원에서 논의해야 한다.
- 연구결과에 대한 전문가 좌담회나 공청회를 개최하여 여론을 수렴해야 한다.

다) 연구 결과

간호교육평가원, 의학교육평가원, 공학교육인증원의 인증평가절차를 토대로 하여 한국상담교육인증평가절차를 <표 1>과 같이 제시하였다.

<표 1> 한국상담교육인증평가 절차 및 비용

구분	한국상담교육인증평가 절차	비 고
과정	1. 인증평가 매뉴얼 개발 및 보급	
	2. 대학의 인증신청	
	3. 대학의 자체평가	
	4. 서면평가 및 현장 방문평가	
	5. 평가결과 종합분석 및 1차 발표 통보	
	6. 이의신청 및 재평가	
	7. 평가결과 최종 판정	
	8. 이사회 승인	
	9. 인증결과 확정 및 공지	

1. 평가매뉴얼 개발 및 보급

- 한국상담교육인증평가 운영을 위해 인증 기준을 개발하여 평가인증을 위한 기준을 제시한다.
- 한국상담교육인증평가원은 대학의 자체 평가를 위한 평가내용을 개발하여 제공한다.
- 인증기준은 한국상담교육인증평가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고 이사회가 승인하여 확정한다.

2. 대학의 인증신청

- 각 대학의 상담관련학과는 학과운영, 교육과정, 학생, 교수, 교육환경, 교육성과 총 6개의 인증평가영역이 완성되면 신청한다.

3. 대학의 자체 평가

- 상담교육인증평가원은 인증평가를 신청한 상담관련학과가 자체평가의 목적을 이해하고 자체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하고, 자문 등을 통해 자체평가를 지원한다.

4. 서면평가 및 현장 방문평가

- 상담관련학과에서 제출한 자체평가서를 보고 서면평가를 실시한 후 상담교육기관을 상담교육인증평가단이 현장 방문하여 서면평가 내용을 확인하고 점검한다.

5. 평가단의 평가결과 분석 및 1차 발표 통보

- 인증평가위원회는 운영세칙에 맞게 평가결과를 분석하여 윤리지침을 준수하고 평가인증을 실행한다.

그리고 평가결과를 통보한다.

6. 이의신청 및 재평가

- 인증기간 중에 인증이 철회된 프로그램은 판결정기에 이의 신청을 한다.
- 재심위원회는 이의신청 내용에 대해 심의하고 이사회에 재심 결과를 보고한다.

7. 평가결과 최종 판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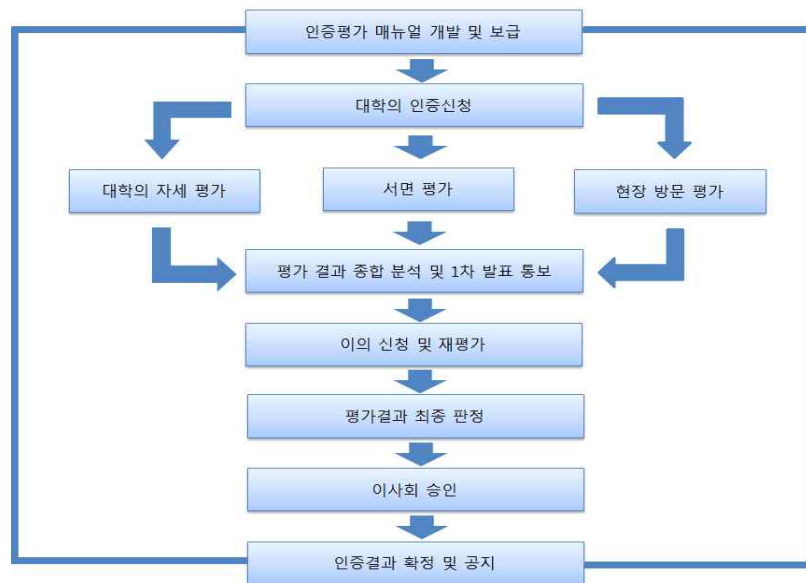
- 인증평가는 평가항목과 평가영역의 평정기준에 의하여 판정하며 최종 평정결과에 따른다.

8. 이사회 승인

- 상담교육인증평가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고, 이사회가 승인하여 확정한다.

9. 인증결과 확정 및 공지

- 상담교육인증평가원은 해당 상담관련학과의 인증·평가가 완료되면 평가 상담관련학과에 결과를 통보한다.



■ 인증심사 신청비

년도	인증신청	서면평가	현장방문평가	총 비용
2015	2,000,000	1,000,000	1,000,000	4,000,000

3) 상담교육기관 업무 개발

가) 연구방법

○ 상담교육인증 심포지움 개최

1. 주 제

상담교육인증의 방향과 과제

2. 행사개요

가. 일 시 : 2015. 04. 04. (토)

나. 시 간 : 14:00~17:30

나. 장 소 : 전주대학교 온누리 홀 2층 대강당

3. 주 관 : 전국대학상담학과협의회

4. 주 최 : 전주대학교 상담교육연구소

5. 후 원 : 한국상담학회, 한국연구재단, 전주대학교 상담심리학과

6. 행사준비위원

행사진행 총괄	행사준비위원	비고
김인규	오은수, 국현정, 정승영 최현아, 이안나, 조남정, 손요한	전국대학상담학과협의회 상담교육연구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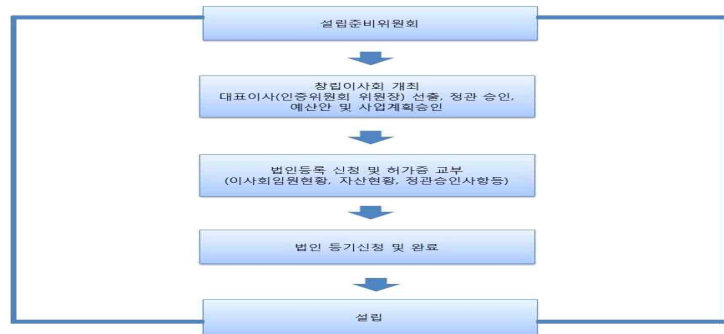
7. 심포지움 전문가 발표자

구분	성명	소속	구분	성명	소속
사회	이호준	전주대학교 상담심리학과 교수	발표2	김택호	한국상담심리학회 자격검정위원장
인사말 발표4	김계현	서울대학교 교수 전 한국상담학회 회장		김동민	중앙대학교 교육학과교수(좌장)
주제 발표	김인규	전주대학교 상담심리학과 교수		김지현	홍익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발표1	유현실	단국대학교 상담심리학과 교수	발표3	전인식	한국교육개발원 Wee특임센터장
	장은진	침례신학대학교 상담심리학과 교수		소수연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자격연수부장
	김상민	김천대학교 상담학과 교수		서영석	연세대학교 교육학과 교수(좌장)
	홍지영	전주대학교 상담심리학과 교수(좌장)	발표4	김장희	경상대학교 교육학과 교수(좌장)
발표2	반신환	한국상담학회 자격연수위원장		황진태	정신건강증진협회 사무국장

나) 연구 내용

1. 상담교육인증체계 구축 로드맵

상담교육인증기구 설립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그림2] 상담교육인증기구 설립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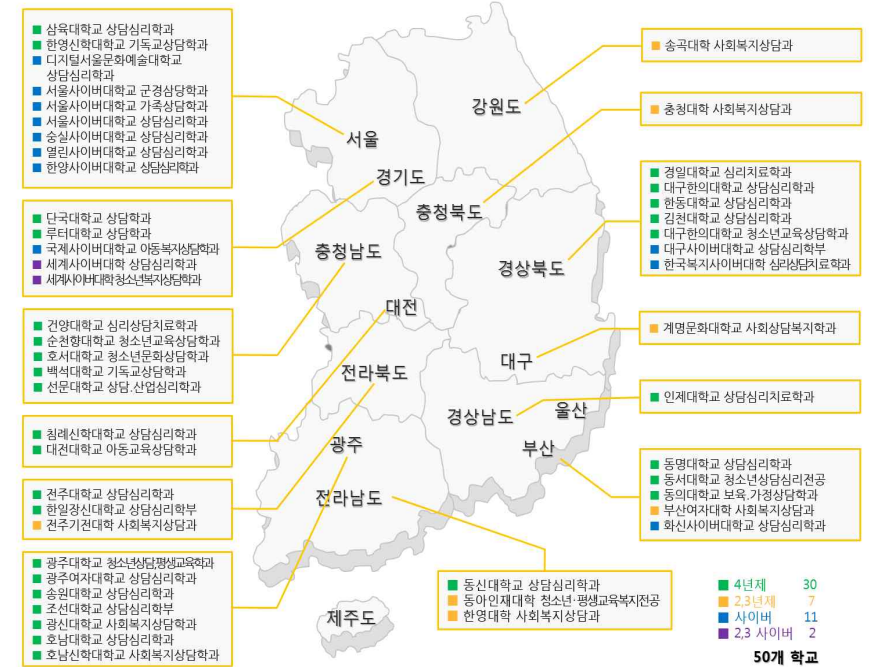
먼저 상담교육인증기구 설립을 위한 설립준비위원회를 선출한다. 그 후, 이사회(사단법인의 경우는 총회)를 개최하여 이사장과 초대원장을 선출한다. 이어서 실질적인 인증기구운영과 평가를 실시할 운영위원회 또는 실행위원회를 설치하여 사단법인등록을 신청하거나 재단법인의 승인을 받는다.

설립준비위원회 및 인증기구에는 상담학과, 상담학계, 상담현장, 인증행정분야 등 4개 영역의 전문가가 참여하도록 한다. 상담학과 영역은 현재 상담학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학부의 학과들을 의미한다. 현재 전국대학상담학과협의회에서 파악한 학부 수준의 상담학과는 총 50개로서 4년제 41개, 2-3년제 9개이며, 매년 여러 대학에서 상담학과들이 새로이 생겨나고 있다.

상담학계 영역은 한국상담학회, 한국상담심리학회 등 상담관련 전문학회와 대학원 수준에서 상담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다양한 전문가들을 의미한다. 이들은 상담관련 자격 발급, 학부에 이은 대학원에서의 상담교육을 관장하고 있어 학부 상담학과 교육인증에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상담현장 영역은 학부 졸업생을 채용해서 활용하는 상담관련 산업계를 의미한다. 여기에는 청소년상담, 학교상담, 아동상담 등 상담 직접 관련 분야와 기업체 인사 파트, 대인서비스 관련 사업, 교육관련 사업 등 상담 간접 관련 분야가 포함된다. 이들은 상담학과 졸업생을 직접 활용하면서 대학에서의 상담교육내용에 관심을 갖고 있으므로 이 인증위원회에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인증행정 영역은 고등교육인증에 관련된 정부부처 및 산하기관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교육부 대학정책실, 고등교육평가원, 대학교육협의회 등과 상담관련 자격을 관리하는 직업능력개발원,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등이 포함된다. 이들은 상담교육인증의 국가 제도화를 관장하고, 국가자격과의 관련을 담당하므로 이 인증위원회에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림3] 전국대학상담학과 현황도

2. 상담교육인증기구(안)

상담교육인증기구는 사단법인 형태 또는 재단법인 형태로 설립할 수 있는데, 공학과 경영학의 경우는 사단법인으로, 의학과 간호학은 재단법인으로 운영하고 있다.

사단법인의 경우, 총회를 주축으로 이사회와 감사로 구성되는데 감사는 필수요소는 아니다. 총회는 정회원과 특별회원으로 구성되며 원장은 총회의 의장이 된다. 총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의결하는 기능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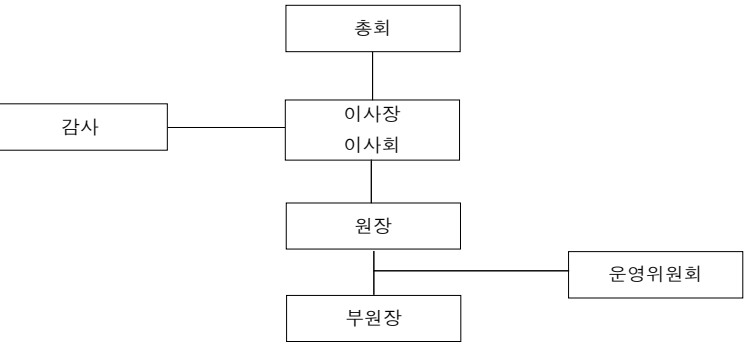
1. 정관 개정
2. 원장의 선임 인준과 이사 및 감사의 선임
3. 사업 계획의 승인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기타 이사회에서 부의한 사항

이사회는 이사장 및 이사로 구성되며 그 기능으로는 다음의 사항을 심회 의결한다.

1. 원장의 선임
2. 회원의 입회 및 퇴회
3. 규정, 규칙 및 세칙의 제정 및 개정
4. 업무 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인증에 관한 사항
6. 총회에서 토의될 사항
7.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8. 국내외 유관기관과의 협약체결에 관한 사항
9. 기타 총회의 의결이 필요하지 않은 업무에 관한 사항
10. 상기 사항에 관한 업무는 필요 시 운영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으며,

위임사항은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운영위원회는 이사회에서 의결한 기구의 제반업무를 수행한다.



[그림4] 사단법인의 조직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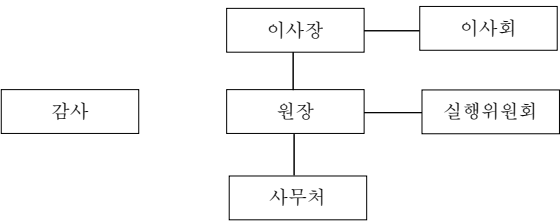
재단법인이 사단법인과 구별되는 가장 큰 차이점은 총회가 없으며 대표기관으로써 이사가 유일한 필수기관이 된다는 점이다. 이사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능을 한다.

1. 예산·결산·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개정에 관한 사항
3. 해산에 관한 사항
4. 임원과 원장의 선출과 해임
5. 사업 계획 승인
6. 기타 운영에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실행위원회의 구성은 원장이 자신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실행위원회를 두고, 실행위원회는 10명 내외의 실행위원으로 구성하며, 실행위원은 원장이 임명하며 선출된 실행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에 관하여 원장의 업무를 보좌한다.

1. 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과 예산·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3. 이사장 또는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
4. 자산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항
5. 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6. 서무와 회계에 관한 사항
7. 기타 업무 운영에 관한 사항

사무국은 원장이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두고 직원을 채용할 수 있으며, 사무국의 직제에 관한 사항과 직원의 임용, 승진, 보수, 복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그림5] 재단법인의 조직구성

3. 상담교육인증절차(안)

상담교육인증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된다.

가. 평가매뉴얼 개발 및 보급

- 한국상담교육인증평가 운영을 위해 인증 기준을 개발하여 평가인증을 위한 기준을 제시한다.
- 한국상담교육인증평가원은 대학의 자체 평가를 위한 평가내용을 개발하여 제공한다.
- 인증기준은 한국상담교육인증평가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고 이사회가 승인하여 확정한다.

나. 대학의 인증신청

- 각 대학의 상담관련학과는 학과운영, 교육과정, 학생, 교수, 교육환경, 교육성과 총 6개의 인증평가 영역이 완성되면 신청한다.

다. 대학의 자체 평가

- 상담교육인증평가는 인증평가를 신청한 상담관련학과가 자체평가의 목적을 이해하고 자체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하고, 자문 등을 통해 자체평가를 지원한다.

라. 서면평가 및 현장 방문평가

- 상담관련학과에서 제출한 자체평가서를 보고 서면평가를 실시한 후 상담교육기관을 상담교육인증평가단이 현장 방문하여 서면평가 내용을 확인하고 점검한다.

마. 평가단의 평가결과 분석 및 1차 발표 통보

- 인증평가위원회는 운영세칙에 맞게 평가결과를 분석하여 윤리지침을 준수하고 평가인증 을 실행한다. 그리고 평가결과를 통보한다.

바. 이의신청 및 재평가

- 인증기간 중에 인증이 철회된 프로그램은 판결정과에 이의 신청을 한다.
- 재심위원회는 이의신청 내용에 대해 심의하고 이사회에 재심 결과를 보고한다.

사. 평가결과 최종 판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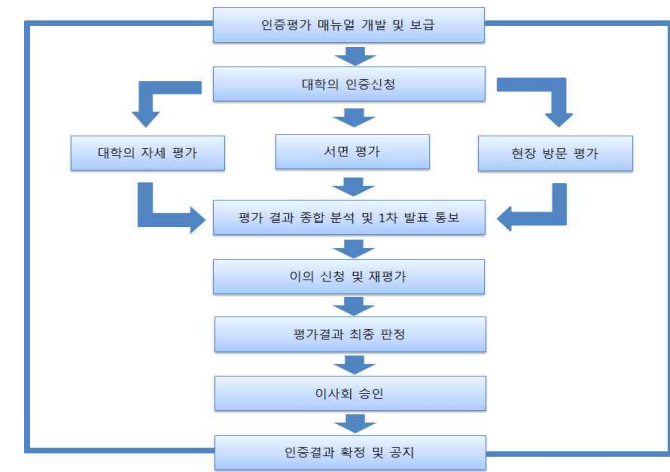
- 인증평가는 평가항목과 평가영역의 평정기준에 의하여 판정하며 최종 평정결과에 따른다.

아. 이사회 승인

- 상담교육인증평가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고, 이사회가 승인하여 확정한다.

자. 인증결과 확정 및 공지

- 상담교육인증평가원은 해당 상담관련학과의 인증·평가가 완료되면 평가 상담관련학과에 결과를 통보한다.



[그림6] 상담교육인증절차

4. 상담교육인증 행정사항(안)

각 학과는 상담교육인증을 받기 위해 다음과 같은 행정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가. 상담교육인증에 대한 이해와 합의

(가칭) 상담교육인증원에서 배포하는 상담교육인증편람을 통해 상담교육인증의 내용과 체제를 숙지하고, 이를 해당 학과에서 수행할 것에 대한 구성원의 합의를 도출한다.

나. 대학본부 및 관련부서에 상담교육인증에 대한 설명 제공과 협조 확보

상담교육인증의 필요성과 효과에 대해 대학본부 및 관련부서를 설득하고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물리적 지원을 확보한다.

다. 상담교육인증 신청

(가칭) 상담교육인증원이 제시한 상담교육인증 신청 절차에 따라 상담교육인증을 신청한다.

라. 자체평가보고서 작성

상담교육인증 편람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자체평가보고서를 작성한다.

- 자체평가의 절차는 크게 사전준비, 자체평가계획 수립, 자체평가 추진, 자체평가결과 활용 등의 4단계로 나눌 수 있음
- 사전준비 단계에서는 이전 평가에 대한 이행사항 점검, 상담교육인증원의 평가정책 모니터링, 평가주관기관과의 유기적 협력관계 유지, 평가에 대한 기본정보 및 자료 수집, 자체평가 시행관련 공문 수발, 자체평가 추진에 대한 의견수렴 등의 업무가 추진됨
- 자체평가계획수립 단계에서는 자체평가추진 조직 구성 및 운영계획 수립, 자체평가추진 일정 계획, 자체평가추진 소요예산 계획 등의 업무가 추진됨

- 자체평가 추진 단계에서는 평가기준에 대한 검토, 자료수집 및 분석, 평가위원별 평가활동, 자체평가 보고서 작성, 자체평가보고서 보고 등의 업무가 추진됨
- 자체평가결과 활용단계에서는 자체평가보고서 제출, 자체평가결과의 센터발전계획에 반영 등의 업무가 추진됨
- 자체평가보고서 내용은 다음과 같이 구성함

제 I 장 학과 개황
 학과의 현황에 대한 개괄적 소개
 제 II 장 평가 결과
 1. 평가채점결과 종합
 - 지표별 평가표의 평가점수를 종합하여 제시
 2. 지표별 평가표
 - 영역별, 지표별 평가표 작성
 - 평가의 근거자료 첨부
 제 III 장 종합 논의
 자체평가 결과에 대한 평가와 대책 제시

마. 현장평가 수집
 (가칭) 상담교육인증원과 일정 합의를 하여 현장평가를 받는다.

바. 이의신청
 1차 평가결과가 발표되면 이를 검토하여 필요시 이의신청을 한다.

사. 평가결과 활용
 최종 평가결과를 학과 운영에 반영한다.

5. 상담교육인증 평가 배점표

영역	부문	내용요약
I. 학과운영 (16)	1.1 비전 목표 (4)	1.1.1 상담 비전 목표 (4)
	1.2 운영체계 (12)	1.2.1 교육과정 공지 (4)
		1.2.2 교육과정 편성 (4)
		1.2.3 졸업 기준과 절차 (4)
II. 교육과정 (16)	2.1 학습 목표 (4)	2.1.1 학습 성과 (4)
	2.2 교과목 운영 (4)	2.2.1 교육과정 운영 (4)
	2.3 실습 운영 (8)	2.3.1 실습 인원 (4)
		2.3.2 실습 시간 (4)
III. 학생 (20)	3.1 학생선발 (4)	3.1.1 학생선발방법 (4)
	3.2 학생지도 (8)	3.2.1 학생지도 체계 (4)
		3.2.2 학생지도 지원시스템 운영 (4)
	3.3 학생지원 (4)	3.3.1 학생활동 지원 (4)
IV. 교수 (28)	4.1 교수확보 (16)	4.1.1 전임교원확보 (4)
		4.1.2 교수 채용 (4)
		4.1.3 교수 역량 (4)
		4.1.4 비전임교원 확보 (4)
	4.2 교수업적 (8)	4.2.1 전임교수 수업시수 (4)
		4.2.2 교수 수업 현황 (4)
	4.3 교수개발지원 (4)	4.3.1 교수개발지원 (4)
V. 교육환경 (16)	5.1 행정체계 (4)	5.1.1 대학의 행정지원체계 (4)
	5.2 재정지원 (4)	5.2.1 교육관련 재정지원 (4)
	5.3 교육시설 (4)	5.3.1 교육시설확보 (4)
	5.4 행정 및 교육보조인력 (4)	5.4.1 행정 및 교육보조인력 확보 (4)
VI. 교육성과 (8)	6.1 교육성과평가 (4)	6.1.1 프로그램 학습 성과 평가 (4)
	6.2 졸업생 진로 (4)	6.2.1 졸업생 지원체제 구축 (4)

6. 상담교육인증 영역별 평가기준

I. 조직운영 영역

세부 영역	평가지표(문항)	평가내용	평가기준	비고
I. 학과 운영 (16)	1. 학과는 대학 및 지역사회의 특성, 상담 환경변화, 국내외 상담직에서 요구하는 상담자 핵심 역량 등을 반영하여 상담교육 프로그램의 목적과 목표를 설정하여 구성원들이 알 수 있게 공지한다.	1.1 비전목표 (4)	① 학과는 국내외 상담전문직에서 요구하는 역량과 상담전문직의 보편적 특성, 대학 특성, 이해당사자의 의견 등을 반영하여 학과의 비전 및 교육목표를 체계적으로 설정한다. ② 학과의 비전과 목표가 적절하게 수립되고 공개되었는지를 평가한다. - 우수(4): 2개 항목 해당 - 보통(2): 1개 항목 해당 - 미흡(0): 해당사항 없음	정량
	1. 학과는 상담교육 프로그램에 대하여 기술하고 구성원들이 알 수 있도록 공지해야 한다.	1.2 운영체제 (4)	① 상담교육 프로그램의 내용과 방법에 대하여 구성원과 일반대중이 알 수 있도록 구성한다. ② 상담교육 프로그램의 내용과 방법에 대하여 구성원과 일반대중이 알 수 있도록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공개한다. - 우수(4): 2개 항목 해당 - 보통(2): 1개 항목 해당 - 미흡(0): 해당사항 없음	정량
	2. 학과는 고등교육법 제 2조에 근거한 교육기관의 학사학위 수여과정으로 명시되어 있다.	1.2 운영체제 (4)	① 학과 졸업 후 학사학위과정이 발급된다. ② 학과는 고등교육법 제 2조에 근거한 교육기관의 학사학위 수여과정으로 명시되어 있다. - 우수(4): 2개 항목 해당 - 보통(2): 1개 항목 해당 - 미흡(0): 해당사항 없음	정량
	3. 학과는 해당 대학 및 학과의 교육목표에 적합하도록 교양 및 전공과목 이수 기준 등의 졸업 요건을 제시한다.	1.2 운영체제 (4)	① 전공과목 이수 기준이 해당 대학 및 학과의 교육목표에 적합하다. ② 교양 및 전공과목 이수 기준이 해당 대학 및 학과의 교육목표에 적합하다. - 우수(4): 2개 항목 해당 - 보통(2): 1개 항목 해당 - 미흡(0): 해당사항 없음	정량
II.	1. 상담교육 프로	2.1	① 전공 학습 목표가 7개 역량을 통합하고 있다.	정량

교육 과정 (16)	그림은 졸업 시 학습 성과로서 다음의 역량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	학습목표 (4)	② 7개 역량을 개발, 함양하는 프로그램 및 과정이 제시되어 있다. · 인간발달과 문화이해 능력 · 상담이론 및 상담문제 이해 능력 · 상담개입 능력 · 심리검사 이해, 실시, 해석 · 상담자 윤리이해 및 적용 능력 · 행정실무 능력 · 자기성장 및 소진 대처 능력 - 우수(4): 2개 항목 해당 - 보통(2): 1개 항목 해당 - 미흡(0): 해당사항 없음	
	1. 교과목 운영은 인간발달, 조력관계, 검사 및 평가, 연구와 통계, 실습 및 기타 영역이 균형있게 편성되어야 한다.	2.2 교과목운영 (4)	① 교과목의 특성에 맞게 강의법 이외에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을 적용하고, 적절한 학생 수 규모의 강좌를 운영한다. ② 교과목 운영은 6개 영역(인간발달, 조력관계, 검사 및 평가, 연구와 통계, 실습 및 기타)의 적절한 교과목이 편성되어 있다. - 우수(4): 2개 항목 해당 - 보통(2): 1개 항목 해당 - 미흡(0): 해당사항 없음	정량
	1. 실습과목과 상담현장체험의 그룹 슈퍼비전은 최대 20명의 학생을 넘기지 않는다.	2.3 실습운영 (4)	① 충분한 실습시간을 제공하여 이수하도록 지도하고 있다. ② 실습과목과 상담현장체험의 그룹 슈퍼비전은 최대 20명의 학생을 넘기지 않는다. - 우수(4): 2개 항목 해당 - 보통(2): 1개 항목 해당 - 미흡(0): 해당사항 없음	정량
	2. 학생은 재학기간 중 2학기 이상의 상담실습과 현장체험을 한다.	2.3 실습운영 (4)	① 실습교과목 교수는 충분한 지도시간을 확보하여 실질적으로 학생의 실습을 지도하고 학습성과를 평가 관리한다. ② 학생은 재학기간 중 2학기 이상의 상담실습과 현장체험을 한다. - 우수(4): 2개 항목 해당 - 보통(2): 1개 항목 해당 - 미흡(0): 해당사항 없음	정량
III. 학생 (20)	1. 학과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학생을 선발한다.	3.1 학생선발 (4)	① 학생선발 기준으로써 인성특성이 제시되어 있다. ② 학생선발 기준으로써 대학사정 수능능력이 제시되어 있다. ③ 학생선발 기준으로써 상담관련 진로목표가 제시되어 있다.	정량

			- 우수(4): 3개 항목 해당 - 양호(3): 2개 항목 해당 - 보통(2): 1개 항목 해당 - 미흡(0): 해당사항 없음	
	2. 학과는 학생의 대학생활 적응과 진로개발을 위해 지도교수제도 등 학생지도 체제를 갖추고 있으며 학습, 생활, 진로 등과 관련하여 모든 학생에게 정기적으로 상담과 지도를 제공하고 그 결과를 관리, 활용하고 있다.	3.2 학생지도 (4)	① 학과는 학생의 대학생활 적응과 진로개발을 위해 지도교수제도 등 학생지도 체제를 갖추고 있다. ② 학습, 생활, 진로 등과 관련하여 모든 학생에게 정기적으로 상담과 지도를 제공한다. ③ 그 결과를 관리, 활용하고 있다. - 우수(4): 3개 항목 해당 - 양호(3): 2개 항목 해당 - 보통(2): 1개 항목 해당 - 미흡(0): 해당사항 없음	정량
	3. 학과는 학생의 자기이해를 돕기 위한 상담 및 심리검사 제공 등과 같은 지원 시스템을 운영하고 예산을 운용·집행한 실적이 있다.	3.3 학생지도 (4)	① 학생의 자기이해를 돕기 위한 상담 및 심리검사 제공 등과 같은 지원시스템이 있다. ② 지원시스템 운영을 위한 예산이 확보, 집행되고 있다. - 우수(4): 2개 항목 해당 - 보통(2): 1개 항목 해당 - 미흡(0): 해당사항 없음	정량
	4. 학과는 학생의 대학생활 적응 및 진로개발과 관련하여 장학제도와 같은 지원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3.4 학생지원 (4)	① 장학제도 등 학생지원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 ② 적절한 비율의 학생이 학생지원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다. - 우수(4): 2개 항목 해당 - 보통(2): 1개 항목 해당 - 미흡(0): 해당사항 없음	정량
	5. 학과는 학생의 학과 적응과 상담직무에 대한 적응을 돕기 위해 학과 차원에서 학생들을 위한 학과 적응 프로그램 및 제 학생 대상 직업적응 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실시, 운영하고 있다.	3.5 학과 적응 및 직업적응 프로그램 (4)	① 학과 적응 및 직업적응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② 적절한 비율의 학생이 학과적응 및 직업적응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있다. - 우수(4): 2개 항목 해당 - 보통(2): 1개 항목 해당 - 미흡(0): 해당사항 없음	정량
IV. 교수 (28)	1. 전체 학생에 대한 전임 교수의 비율이 40:1을 넘지 않는다.	4.1 교수확보 (4)	① 학생 규모에 비례하여 전임교원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 ② 전체 학생에 대한 전임 교수의 비율이 40:1을 넘지 않는다. - 우수(4): 2개 항목 해당 - 보통(2): 1개 항목 해당 - 미흡(0): 해당사항 없음	정량

	2. 학과에서는 다양한 교수진의 모집, 채용, 유지를 위해 체계적인 노력을 한다.	4.1 교수확보 (4)	① 상담관련 다양한 분야의 학과 교수를 채용하기 위해 노력을 하였다. ② 학교는 교수채용, 승진, 재계약 관련 적절한 체제를 갖추고 있다. - 우수(4): 2개 항목 해당 - 보통(2): 1개 항목 해당 - 미흡(0): 해당사항 없음	정량
	3. 학과는 학과의 임무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역량과 절이 있는 교수진으로서 다음 조건들을 충족하는 학과 소속 교수를 확보한다.	4.1 교수확보 (4)	① 상담전공의 박사학위 소지자 ② 상담 영역과 관련한 준비와 경험 ③ 상담분야 전문학회의 회원으로서, 그리고 전문가 자격을 통한 상담전문가의 정체성 ④ 상담 전문가 활동 및 상담분야 전문 학회 활동에 참여 - 우수(4): 4개 항목 해당 - 양호(3): 3개 항목 해당 - 보통(2): 2개 항목 해당 - 미흡(0): 1개 해당항목	정량
	4. 학과는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비전임 교수(예: 객원교수, 산학협력교수, 임상교수 등)를 채용하여 프로그램의 임무, 목적과 교육과정을 지원할 수 있다.	4.1 교수확보 (4)	① 교수는 상담 및 연관분야 박사수료 소지자, ② 담당 교육 분야 관련 준비와 경험, ③ 상담분야 전문 학회 회원, 적합한 자격을 통한 상담전문가의 정체성 - 우수(4): 3개 항목 해당 - 양호(3): 2개 항목 해당 - 보통(2): 1개 항목 해당 - 미흡(0): 해당사항 없음	정량
	1. 전임교수가 수업시수가 전체 교과목 수업시수의 60% 이상 수준이다.	4.2 교수업적 (4)	① 학과는 전임교원의 수업시수를 관리하며, 전임교원의 전공과목에 책무성을 유지하고 있다. ② 전임교수가 수업시수가 전체 교과목 수업시수의 60% 이상 수준이다. - 우수(4): 2개 항목 해당 - 보통(2): 1개 항목 해당 - 미흡(0): 해당사항 없음	정량

V. 교육 환경 (16)	2. 교수진은 상담 분야 연구 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4.2 교수업적 (4)	① 교수진은 대학의 교수 업적 평가 제도에 부합하여 교수 역량을 개발하고 학문분야 발전에 기여한다. ② 교수진은 상담분야 연구 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 우수(4): 2개 항목 해당 - 보통(2): 1개 항목 해당 - 미흡(0): 해당사항 없음	정량
	3. 학과는 교수들이 교육자와 연구자로서 지속적으로 자기개발을 할 수 있도록 교육 및 연구 활동 지원 체계에 관한 근거 규정을 두고 있으며, 교수 개발을 위해 행·재정적 지원을 한다.	4.3 교수개발지원 (4)	① 대학은 교육 및 여구 활동과 관련하여 교수개발을 행·재정적 지원체계를 갖추고 있다. ② 상담전공 교수들이 대학의 교육 및 연구 지원체계를 적절하게 활용하고 있다. - 우수(4): 2개 항목 해당 - 보통(2): 1개 항목 해당 - 미흡(0): 해당사항 없음	정량
	1. 교육기관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기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제공한다.	5.1 행정체계 (4)	① 학과는 대학의 학칙에 부합하는 학과 운영에 관한 규정, 기구표, 인력 등에 관한 문서화된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그에 따라 학과를 운영하고 있다. ② 학과장은 상담교육에 대한 이해와 경험을 갖춘 전임교수로서 학과의 교수 인사, 예산 책정 등을 포함하여 학과 운영에 관한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대학의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고 있다. - 우수(4): 2개 항목 해당 - 보통(2): 1개 항목 해당 - 미흡(0): 해당사항 없음	정량
	2. 교육기관은 이 프로그램의 학습 환경에 대한 연속성,	5.2 재정지원 (4)	① 교육기관은 프로그램의 학습환경에 대한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있다. ② 교육기관은 프로그램의 학습환경에 대한 실습 관련 예산이 적절하게 편성되어 있다.	정량

VI. 교육 성과 (8)	질, 효과성을 보장하기 위해 충분한 재정지원을 한다.		- 우수(4): 2개 항목 해당 - 보통(2): 1개 항목 해당 - 미흡(0): 해당사항 없음	
	3. 교육기관은 학생지도와 수업 준비 및 연구 등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대학 내,외에 교수실, 강의실과 세미나실 등을 확보하고 운영하여 모델링, 상담시연, 슈퍼비전, 훈련에 도움이 되는 상담교육 환경을 제공한다.	5.3 교육시설 (4)	① 교육기관은 대학 내, 외에 교수실, 강의실과 세미나실 등을 확보, 운영하고 있다. ② 교육기관은 모델링, 상담시연, 슈퍼비전, 훈련에 도움이 되는 상담교육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 우수(4): 2개 항목 해당 - 보통(2): 1개 항목 해당 - 미흡(0): 해당사항 없음	정량
	4. 학과 행정 업무를 위한 학과 사무실을 확보하고 있으며,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행정 및 교육 보조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	5.4 행정 및 교육보조인력 (4)	① 학과 행정 업무를 위한 학과 사무실을 확보하고 있다. 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행정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 ③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교육보조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 - 우수(4): 3개 항목 해당 - 양호(3): 2개 항목 해당 - 보통(2): 1개 항목 해당 - 미흡(0): 해당사항 없음	정량
	1. 프로그램의 교수진은 학과의 임무, 목표, 학생의 학습 성과 등의 측정과 결과 등을 포함하여 프로그램에 대한 지속적인 평가와 체계적인 평가를 실시해야하며 평가 계획은 다음을 포함한다.	6.1 교육성과 평가 (4)	다음을 포함한다. ① 프로그램, 교육과정, 프로그램 지원자의 특성에 대한 검토 ② 전문가 정체성, 전문적 지식 및 실천 등에서의 학습과 수행에 대한 평가 ③ 프로그램의 개정 사항을 포함하여 프로그램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 결과를 문서화한 공적인 보고서 작성하여 열람 가능한 형태로 제시 - 우수(4): 3개 항목 해당 - 양호(3): 2개 항목 해당 - 보통(2): 1개 항목 해당 - 미흡(0): 해당사항 없음	정량
	2. 대학은 학부생의 졸업 후 진로를 돕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며, 취	6.2 졸업생진로 (4)	① 취업 및 진학 지원체제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② 취업 및 진학 지원체제 비율이 일정 수준 이상이다.	정량

	업이나 대학 원 진학에 대 한 적절한 지 원체제를 구 축하여 운영 하고 있다.		- 우수(4): 2개 항목 해당 - 보통(2): 1개 항목 해당 - 미흡(0): 해당사항 없음	
--	--	--	--	--

7. 상담교육인증 영역별 학과 준비사항

1. 학과운영

1.1 비전 목표

평가개요
학과의 비전과 목표가 적절하게 수립되고 공개되었는지를 평가한다.

1-1-1

학과는 대학 및 지역사회의 특성, 상담 환경 변화, 국내의 상담직에서 요구하는 상담자 핵심역량 등을 반영하여 상담교육 프로그램의 목적과 목표를 설정하여 구성원들이 알 수 있게 공지한다.

[인증기준]

- ①학과는 국내외 상담전문직에서 요구하는 역량과 상담전문직의 보편적 특성, 대학 특성, 이해당사자의 의견 등을 반영하여 학과의 비전 및 교육목표를 체계적으로 설정한다.
- ②학과는 비전과 목표가 적절하게 수립되고 공개되었는지를 평가한다.

[근거자료]

1. 대학요람
2. 학과 홍보 자료
3. 교육목적 및 목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1.2 운영체계

평가개요
학과가 상담전공 학사과정으로서 적절한 운영체계를 갖추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1-2-1

학과는 상담교육 프로그램에 대하여 기술하고 구성원들이 알 수 있도록 공지해야 한다.

[인증기준]

상담교육 프로그램의 내용과 방법에 대하여 구성원과 일반대중이 알 수 있도록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공개한다.

[근거자료]

1. 교육과정 수강 편람

2. 교육관련 학사관리 및 관련 학칙

1-2-2

학과는 고등교육법 제 2조에 근거한 교육기관의 학사학위 수여과정으로 명시되어 있다.

[인증기준]

①학과 졸업 후 학사학위과정이 발급된다.

②학과는 고등교육법 제 2조에 근거한 교육기관의 학사학위 수여과정으로 명시되어 있다.

[근거자료]

1. 대학요람
2. 학생지도 체제 관련 자료

1-2-3

학과는 해당 대학 및 학과의 교육목표에 적합하도록 교양 및 전공과목 이수 기준 등의 졸업요건을 제시한다.

[인증기준]

교양 및 전공과목 이수 기준이 해당 대학 및 학과의 교육목표에 적합하다.

[근거자료]

1. 졸업을 위한 이수학점 등의 관리 규정
2. 학생 성적표
3. 전학년 교육과정 편성표

2. 교육과정

2.1 학습 목표

	평가개요	
상담교육 프로그램의 교육과정이 상담자의 기본역량을 개발하는데 적합하도록 편성되었는지를 평가한다.		

2-1-1

상담교육 프로그램은 졸업 시 학습 성과로서 다음의 역량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

- 인간발달과 문화 이해 능력
- 상담이론 및 상담문제 이해 능력
- 상담개입 능력
- 심리검사 이해, 실시, 해석 능력
- 상담자 윤리이해 및 적용 능력
- 행정실무 능력

- 자기성장 및 소진 대처 능력

[인증기준]

①전공 학습 목표가 7개 역량을 통합하고 있다.

②7개 역량을 개발, 함양하는 프로그램 및 과정이 제시되어 있다.

[근거자료]

1. 전 학년 교육과정 편성표
2. 학과의 교육목표 진술문
3. 교육목표 달성체계도

2.2 교과목 운영

	평가개요	
교육과정은 학생이 프로그램 학습성과를 달성하여 상담사로서의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이론 및 실습교과목을 적절하게 구성되는지를 평가한다.		

2-2-1

교과목 운영은 인간발달, 조력관계, 검사 및 평가, 연구와 통계, 실습 및 기타 영역이 균형있게 편성되어야 한다.

[인증기준]

교과목 운영은 6개 영역의 적절한 교과목이 편성되어 있다.

[근거자료]

1. 교육과정 편성표
2. 과목별 강의계획서

2.3 실습운영

	평가개요	
학과는 실습교과목의 학습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실습교과목 운영 규정에 근거하여 상담실습시간을 충분히 확보하고 학생이 이수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2-3-1

실습과목과 상담현장체현의 그룹 슈퍼비전은 최대 20명의 학생을 넘기지 않는다.

[인증기준]

실습과목과 상담현장체험의 그룹 슈퍼비전은 최대 20명의 학생을 넘기지 않는다.

[근거자료]

1. 규정 지침
2. 슈퍼비전 지도 일지/ 보고서
3. 실습 교과목별 운영지침서

2-3-2

학생은 재학기간 중 2학기 이상의 상담실습과 현장체험을 한다.

[인증기준]

학생은 재학기간 중 2학기 이상의 상담실습과 현장체험을 한다.

[근거자료]

1. 상담실습 운영 규정 또는 지침
2. 학생의 상담실습 지도일지/ 보고서

3. 학생

3.1 학생선발

평가개요
건학이념과 사회적 책무성에 기초한 선발 기준 및 절차에 따라 학생 선발이 이루어지는지를 평가한다.

3-1-1 학과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학생을 선발한다.

- 인성특성
- 대학과정 수학능력
- 상담관련 진로목표

[인증기준]

학생선발 기준으로써 인성특성, 대학과정 수학능력, 상담관련 진로목표가 제시되어 있다.

[근거자료]

1. 학생선발 제도 관련자료
2. 입학제도에 대한 입학정책 관련 자료

3.2 학생지도

평가개요
학과는 학생들의 학습, 생활, 진로의 3가지 분야와 관련하여 학생에게 정기적으로 상담과 지도를 제공하고 그 결과를 관리, 활용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3-2-1

학과는 학생의 대학생활 적응과 진로개발을 위해 지도교수제도 등 학생지도 체제를 갖추고 있으며 학습, 생활, 진로 등과 관련하여 모든 학생에게 정기적으로 상담과 지도를 제공하고 그 결과를 관리, 활용하고 있다.

[인증기준]

- ① 학과는 학생의 대학생활 적응과 진로개발을 위해 지도교수제도 등 학생지도 체제를 갖추고 있다.
- ② 학습, 생활, 진로 등과 관련하여 모든 학생에게 정기적으로 상담과 지도를 제공한다.
- ③ 그 결과를 관리, 활용하고 있다.

[근거자료]

1. 학생지도 관련규정 체제
2. 학생 상담 및 지도실적
3. 상담 결과 활용 실적

3-2-2

학과는 학생의 자기이해를 돕기 위한 상담 및 심리검사 제공 등과 같은 지원시스템을 운영하고 예산을 운용·집행한 실적이 있다.

[인증기준]

- ① 지원시스템이 있다.
- ② 지원시스템 운영을 위한 예산이 확보, 집행되고 있다.

[근거자료]

1. 지원시스템 관련 자료
2. 지원시스템 관련 예산
3. 지원시스템 관련 자금

3.3 학생지원

평가개요
학과가 신입생 및 재학생이 학과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장학제도나 학과특성화 프로그램 등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체계적으로 운영하는지 평가한다.

3-3-1

학과는 학생의 대학생활 적응 및 진로개발과 관련하여 장학제도와 같은 지원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인증기준]

- ① 장학제도 등 학생지원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
- ② 적절한 비율의 학생이 학생지원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다.

[근거자료]

1. 장학금 지급 등 학생 지원 및 체제 자료
2. 장학생 선발 및 지급 현황자료
3. 학과의 학생지원 실적

3-4 학과 적응 및 직업 적응 프로그램

평가개요
학교 및 학과가 학생들의 학과 적응 및 직업적응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여 학생의 취업과 상담직무에 대한 적응을 돕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3-4-1

학과는 학생의 학과 적응과 상담직무에 대한 적응을 돕기 위해 학과 차원에서 학생들을 위한 학과 적응 프로그램 및 재학생 대상 직업 적응 프로그램을 교과목에 정기적으로 실시, 운영하고 있다.

[인증기준]

- ①학과적응 및 직업적응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 ②적절한 비율의 학생이 학과적응 및 직업적응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있다.

[근거자료]

1. 최근 3년간 학과적응 및 직업적응 프로그램 개용
2. 학과적응 및 직업적응 프로그램 운영 실적

4. 교수

4.1 교수확보

평가개요
학과는 임무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역량과 자질이 있는 교수진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4-1-1

전체 학생에 대한 전임 교수의 비율이 40:1을 넘지 않는다.

[인증기준]

전체 학생에 대한 전임 교수의 비율이 40:1을 넘지 않는다.

[근거자료]

1. 학과 교수 및 학생 현황표

4-1-2

학과에서는 다양한 교수진의 모집, 채용, 유지를 위해 체계적인 노력을 한다.

[인증기준]

- ①상담관련 다양한 분야의 학과 교수를 채용하기위해 노력을 하였다.
- ②학교는 교수채용, 승진, 재계약 관련 적절한 체제를 갖추고 있다.

[근거자료]

1. 전임교원 명부
2. 대학 및 학과 인사규정
3. 교수채용 공고문

4-1-3

학과는 학과의 임무와 목적을 달성 할 수 있는 역량과 자질이 있는 교수진으로서 다음 조건들을 충족하는 학과 소속 교수를 확보한다.

- 상담 전공의 박사학위 소지자
- 담당 영역과 관련한 준비와 경험
- 상담분야 전문학회의 회원으로서, 그리고 전문가 자격을 통한 상담전문가의 정체성
- 상담 전문가 활동 및 상담분야 전문 학회 활동에 참여

[인증기준]

학과의 교수는 상담 전공의 박사학위 소지자, 담당 영역과 관련한 준비와 경험, 상담분야 전문학회의 회원으로서, 그리고 전문가 자격을 통한 상담전문가의 정체성, 상담 전문가 활동 및 상담분야 전문학회 활동에 참여하는 기준을 충족한다.

[근거자료]

1. 교수별 이력서

4-1-4

학과는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비전임 교수(예: 객원교수, 산학협력교수, 임상교수 등)를 채용하여 프로그램의 임무, 목적과 교육과정을 지원할 수 있다.

- 상담 및 연관분야 박사수료 소지자
- 담당 교육 분야 관련 준비와 경험
- 상담분야 전문 학회 회원, 적합한 자격을 통한 상담전문가의 정체성

[인증기준]

학과의 비전임 교수는 상담 및 연관분야 박사수료 소지자, 담당 교육 분야 관련 준비와 경험, 상담분야 전문 학회 회원, 적합한 자격을 통한 상담전문가의 정체성을 충족한다.

[근거자료]

1. 교수별 이력서

4.2 교수업적

평가개요
학과 교육의 상담 전공 교수로서 적합한 교육 및 연구 활동을 수행하는지를 평가한다.

4-2-1
전임교수의 수업시수가 전체 교과목 수업시수의 60% 이상 수준이다.

[인증기준]
전임교수의 수업시수가 전체 교과목 수업시수의 60% 이상 수준이다.

[근거자료]
1. 전임 교수 수업담당 현황

4-2-2
교수진은 상담분야 연구 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인증기준]
교수진은 상담분야 연구 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근거자료]
1. 교수별 최근 3년간 연구실적

4.3 교수개발진

평가개요
대학이 교수들의 능력개발을 위해 각종 연구 교육 기회를 제공하며, 적절한 지원체계를 갖추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4-3-1
학과는 교수들이 교육자와 연구자로서 지속적으로 자기개발을 할 수 있도록 교육 및 연구활동 지원 체계에 관한 근거 규정을 두고 있으며, 교수 개발을 위해 행·재정적 지원을 한다.

[인증기준]
①대학은 교육 및 연구 활동과 관련하여 교수개발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체계를 갖추고 있다.
②상담전공 교수들이 대학의 교육 및 연구 지원체계를 적절하게 활용하고 있다.

[근거자료]
1. 대학의 교수 개발 지원 체제 자료
2. 교수별 최근 3년간 지원 현황

5. 교육환경

5.1 행정체계

평가개요
학과는 상담교육의 특성과 학생규모를 고려하여 교수 및 학습 활동에 필요한 행정지원 체계를 갖추고 있다.

5-1-1
교육기관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기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제공한다.

[인증기준]
①학과는 대학의 학칙에 부합하는 학과 운영에 관한 규정, 기구표, 인력 등에 관한 문서화된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그에 따라 학과를 운영하고 있다.
②학과장은 상담교육에 대한 이해와 경험을 갖춘 전임교수로서 학과의 교수 인사, 예산 책정 등을 포함하여 학과 운영에 관한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대학의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고 있다.

[근거자료]
1. 업무 회의록 활동 실적
2. 행정업무별 예산 집행 내역

5.2 재정지원

평가개요
학과는 상담교육의 특성과 학생규모를 고려하여 교수 및 학습 활동에 재정지원체계를 갖추고 있다.

5-2-1
교육기관은 이 프로그램의 학습 환경에 대한 연속성, 질, 효과성을 보장하기 위해 충분한 재정지원을 한다.

[인증기준]
①교육기관은 프로그램의 학습환경에 대한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있다.
②교육기관은 프로그램의 학습환경에 대한 실습관련 예산이 적절하게 편성되어 있다.

[근거자료]

1. 학과예산편성내용(최근 3년)

5.3 교육시설

평가개요

학과는 상담교육의 특성 및 학생규모를 고려하여 교수와 학습활동에 필요한 기본시설을 갖추고 적절하게 관리하고 있으며, 실습교육시설과 기자재를 구비하고 적절한 임상실습기관을 확보하고 있다.

5-3-1

교육기관은 학생지도와 수업 준비 및 연구 등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대학 내,외에 교수실, 강의실과 세미나실 등을 확보하고 운영하여 모델링, 상담시연, 슈퍼비전, 훈련에 도움이 되는 상담교육 환경을 제공한다.

[인증기준]

- ①교육기관은 대학 내, 외에 교수실, 강의실과 세미나실 등을 확보, 운영하고 있다.
- ②교육기관은 모델링, 상담시연, 슈퍼비전, 훈련에 도움이 되는 상담교육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근거자료]

1. 교육시설 및 지원시설 관리 내역
2. 학과의 실습 운영 규정

5.4 행정 및 교육보조 인력

평가개요

대학은 교육, 교수, 학생, 연구, 입학, 재정 등으로 구분된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책임자와 인력이 있어야 한다.

5-4-1

학과 행정 업무를 위한 학과 사무실을 확보하고 있으며,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행정 및 교육 보조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

[인증기준]

- ①학과 행정 업무를 위한 학과 사무실을 확보하고 있다.
- ②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행정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
- ③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교육보조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

[근거자료]

1. 학과 행정업무 내역

6. 교육성과

6.1 교육성과평가

평가개요

학과가 졸업 시점에 학생이 성취하기를 기대하는 프로그램 학습 성과 등의 측정과 결과 등을 포함하여 지속적으로 프로그램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를 실시하는지를 평가한다.

6-1-1

프로그램의 교수진은 학과의 임무, 목표, 학생의 학습 성과 등의 측정과 결과 등을 포함하여 프로그램에 대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평가를 실시해야하며 평가 계획은 다음을 포함 한다.

[인증기준]

- 프로그램, 교육과정, 프로그램 지원자의 특성에 대한 검토
- 전문가 정체성, 전문적 지식 및 실천 등에서의 학습과 수행에 대한 평가
- 프로그램의 개정 사항을 포함하여 프로그램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 결과를 문서화한 공적인 보고서를 작성하여 열람 가능한 형태로 제시

[근거자료]

1. 각종 평가 결과 보고서
2. 학생성정 부여기준
3. 최근 3년간 성적 분포 현황

6.2 졸업생 진로

평가개요

졸업생이 현장에서 잘 적응하고 성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졸업 후 지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체제를 갖추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6-2-1

대학은 학부생의 졸업 후 진로를 돕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며, 취업이나 대학원 진학에 대한 적절한 지원체제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인증기준]

- ①취업 및 진학 지원체제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 ②취업 및 진학 지원체제 비율이 일정 수준 이상이다.

[근거자료]

1. 취업 및 진학 지원체제 프로그램
2. 최근 3년간 취업 및 진학 지원체제 프로그램 현황

Ⅲ. 연구결과 활용계획

1. 연구결과 활용계획

가. 연구결과와 활용방안

본 연구는 한국의 상담자교육인증체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활용할 수 있다.

첫째, 상담자교육인증체제 구축에 활용할 수 있다. 현재 상담자교육인증체제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외국의 사례를 소개한 연구(김인규, 2009; 김창대, 2002; 남상인, 김인규, 2009; 서영석 등, 2011; 이상민 등, 2007)는 있으나 본 연구에서처럼 한국의 실정에 맞는 상담자교육인증의 내용과 절차를 제시한 연구는 없었다. 인증을 위한 법적, 행정적 준비에서부터 인증기관 설립, 인증내용과 기준, 인증 준비와 인증심사 절차 등 구체적인 체제구축방안이 제시되게 되므로 본 연구결과에 기초하여 한국의 상담자교육인증체제를 구축하여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상담자교육 프로그램 개선에 활용할 수 있다. 현재 상담자교육 프로그램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발전방향을 제시한 연구(김인규, 2009; 손은령, 2004, 2010; 이숙영, 김창대, 2002; 최해림, 김영혜, 2006)는 많이 있었으나 본 연구에서처럼 질적 수준을 담보하는 상담자교육의 내용과 체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시한 연구는 없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상담자교육인증의 영역별 기준을 준용하고 인증절차에서 제시하는 행정사항을 준수하는 방식으로 각 상담자교육기관의 프로그램을 개선해 나갈 수 있다.

셋째, 전문상담관련 국가표준 개발에 활용할 수 있다. 전문상담의 위상 확보 및 제도적 정착을 위해서는 국가적 수준의 전문상담에 대한 표준이 제시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김인규, 2009; 서영석 등, 2011; 이상민 등, 2007). 본 연구에서 제시된 상담자 교육의 영역과 인증 기준은 이와 같은 국가적 수준의 전문상담에 대한 모델과 표준 개발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상담관련 법제화 및 제도화, 예산확보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 현재 학교상담법 제정, 상담자격증 국가공인화, 전문상담 체제 구축 및 예산 확보 등과 관련하여 활발한 논의와 노력이 전개되고 있으나 상담계 의견의 다양성, 상담인력의 전문성에 대한 불신, 상담체제의 미비 등으로 인해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이러한 전문상담의 제도적 발전을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나. 연구의 학문적·사회적 기여도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학문적·사회적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첫째, 상담자교육의 질적 수준 향상에 기여할 것이다. 현재 한국은 상담자교육과정으로 학부, 일반대학원, 특수대학원 등 학위과정 뿐만 아니라 다양한 민간자격과정이 개설되어 운영되고 있으나 그 교육 내용과 수준에 대한 관리와 통제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다양한 상담자교육체제를 관리할 수 있는 상담자교육기관 관리체제와 교육 내용, 교육 체제, 교육 인프라 등의 상담자교육의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상담자교육의 질적 수준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전문상담의 제도화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현재 한국의 상담은 관련 법이 부재하고 다수의 전문 자격증이 민간 자격증에 머물고 있어 제도적 지원이 미약한 실정이다. 이는 전문상담의 직무와 그 필요 능력에 대해 일반인과 정치권에 충분히 설명을 하지 못한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전문상담활동의 내용과 그를 위해 필요한 지식과 기술수준을 명시하여 제시함으로써 제도적 지원의 필요성과 내용을 구체화하여 전문상담의 제도화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셋째, 상담직의 위상강화에 기여할 수 있다. 현재 한국에서 상담은 크게 대중적 인기를 얻고 있으나 제도적으로는 전문직으로서 확립된 상태는 아니다. 상담의 전문직화를 위해서는 상담법제화, 명칭사용의 독점화 등 다양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지만(명대정, 2000), 우선적으로 질적으로 우수한 전문상담자의 양성이 담보되고 일반국민 및 관련 행정가, 정치인들의 상담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어야 한다. 현재 다양한 활동이 전문상담의 이름하에 행해지고 있어서 일견 상담의 호황으로 보이지만 실상은 그 내용이 부실하고 비전문가가 실시하는 경우가 많아 오히려 상담의 위기상황이 곧 닥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전문상담자교육의 내용과 체제를 제시함으로써 향후 상담직의 전문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다. 교육과의 연계 활용 방안

본 연구의 내용은 상담자 교육과정 및 교육체제에 직접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이므로 다음과 같이 교육과 연계 활용할 수 있다.

첫째, 상담자 양성 교육기관에 연구결과를 배포하여 활용하도록 한다. 현재 상담자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각 대학 및 대학원에 연구결과를 배포하여 각 교육기관의 교육과정 및 교육체제, 교육 인프라 개선에 활용하도록 한다.

둘째, 상담관련 학회에 연구결과를 배포하여 활용하도록 한다. 현재 상담자 자격제도를 운영하는 각 상담관련 학회에 연구결과를 배포하여 각 상담자격제도의 검정과정 및 검정체제 개선에 활용하도록 한다.

2. 연구성과

가. 연구결과 학술발표

- 1) 2013 한국상담학회 연차학술대회 학술논문 발표
- 일시 : 2013. 08. 07
- 장소 : 부경대학교
- 발표 제목 : 한국형 상담교육 인증체제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 2) 2014 한국상담학회 연차학술대회 학술논문 발표
- 일시 : 2014. 08. 14
- 장소 : 서울대학교
- 발표 제목 : 한국형 상담교육 인증체제 기준 개발 연구
- 3) 2013 전국대학상담학과협의회 하계교수연수회 학술발표
- 일시 : 2013. 07. 18
- 장소 : 전주대학교
- 발표 제목 : 상담학과 교육과정 인증체제 개발

- 4) 2014 전국대학상담학과협의회 동계교수연수회 학술발표
- 일시 : 2014. 01. 24
 - 장소 : 전주대학교
 - 발표 제목 : 학부 상담학과 인증기준 안

- 5) 2015 전국대학상담학과협의회 동계교수연수회 학술발표
- 일시 : 2015. 01. 29
 - 장소 : 전주대학교
 - 발표 제목 : 상담학과 인증 매뉴얼 구성

나. 학술지 게재

- 1) 한국형 상담교육인증체제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 게재 학술지 : 상담학연구 14권 3호(한국상담학회 발행, 등재학술지)
 - 게재 일시 : 2013. 9.
- 2) 한국형 상담교육인증체제 기준 개발 연구
 - 게재 예정 학술지 : 상담학연구 15권 6호(한국상담학회 발행, 등재학술지)
 - 게재 예정 일시 : 2015. 12.
- 3) 한국형 상담교육인증체제 구축 방안 연구
 - 게재 예정 학술지 : 상담학연구 16권 1호(한국상담학회 발행, 등재학술지)
 - 게재 예정 일시 : 2016. 2.

Ⅳ. 참고문헌

- 강진령, 유형근, 손현동, 조용선, 신호선(2009). 학교상담 표준모형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 조사연구. 교사 교육연구, 48(3). 59-78.
- 김명랑, 윤우영, 김복기(2008). 한국공학교육인증의 "프로그램 교육목표" 달성을 위한 평가 모형 개발, 공 학교육연구, 11(2). 42-49.
- 김인규 (2008a). 학교상담의 현황과 과제, 교육비평, 24, 165-184.
- 김인규 (2008b). 대학내 상담자 양성과정의 현황과 과제, 2008 한국상담학회 연차 학술대회 자료집. 한국 상담학회.
- 김인규(2009a). 학교상담법제화 방향탐색. 교육학연구, 47(1). 19-47.
- 김인규(2009b). 전문상담교사제도 발전방안 연구. 상담학연구, 10(1). 517-534.
- 김인규(2009c). 학부 상담학과 교육의 현황과 발전방안 연구. 상담학연구, 10(2), 793-811.
- 김인규(2011a). 한국의 학교상담체제. 교육과학사.
- 김인규(2011b). 학교상담 종사자의 상담관련 자격증 현황 및 문제점. 한국교육학회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 김인규, 조남정(2010). DACUM법을 활용한 전문상담교사 직무분석. 한국교원교육연구, 27(2), 97-115.
- 김인규, 조남정, 최은미(2011). Wee 프로젝트 사업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김진희, 오익수, 최동욱, 권혜수 (1995). 학교상담체제발전연구. 청소년대화의광장.
- 김혜숙, 남상인, 구혜영, 박승민 (1995). 청소년상담원 자격인수 교재개발연구. 청소년대화의광장.
- 남상인, 김인규(2009). 상담교육인증체제 도입의 필요성과 방향. 2009 한국상담학회 연차대회 자료집 II. 380-403.
- 명대정 (2000). 상담의 전문직화 방안.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경애, 방기연 (2006). 교육대학원 상담전공 프로그램의 현황과 발전방안. 한국교육학회 2007년 춘계학 술대회 분과학회 자료집. 한국교육학회.
- 박성수, 박재황, 황순길, 오익수 (1993). 청소년상담정책연구. 청소년대화의광장.
- 박재황, 남상인, 김창대 (1993). 청소년 상담교육과정 개발연구. 청소년대화의 광장.
- 서영석 (2004). 상담심리사 직무분석. 한국상담심리학회 미출간 자료.
- 서영석, 정향진, 김민선, 김시연(2011). 상담사 자격제도 개선방안 연구: 학교상담을 중심으로. 한국교육 개발원 정책연구보고서.
- 서영석, 김동일, 고은영, 김민선, 김애란, 최민영(2013). 청소년상담사 자격제도 개선방안 연구. 서울 : 여 성가족부.
- 손은령 (2005). 예비교사를 위한 상담교육과정의 개발과 적용, 학생생활연구, 31. 53-72. 충남대학교 학생 취업 및 생활지원센터.
- 손은령 (2011). 상담자 교육 관점에서 본 예비교사 교육의 과제. 상담학연구, 11(4). 1469-1482.
- 신동은, 최금진(2011). 한국, 일본, 대만의 공학교육인증 평가체제 및 평가기준 비교. 교육행정학연구, 29(1).
- 안현의 (2003). 과학자-실무자 모델의 국내적용 가능성에 관한 논의, 한국 심리학회지: 상담과 심리치료, 15, 461-475.
- 양미진, 이소엽, 조수연(2012). 청소년상담사 핵심역량 및 보수교육 요구분석 연구보고서. 서울 : 한국청 소년상담복지개발원.
- 오익수, 김진희, 김광수, 전명희 (1995). 정부의 청소년상담정책 연구. 청소년대화의광장.

오익수, 이명선, 남상인 (1994). 청소년상담인력개발정책연구. 청소년대화의광장.

유성경 (1999). 청소년상담자의 교육 및 훈련. 한국청소년상담원(편). 청소년상담자론. 229-307.

유인근(2007). 공학교육인증 프로그램의 효과적인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공학교육연구. 10(2). 62-72.

유정이 (1997). 한국 학교상담 형성과정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이상민, 안성희 (2003). 학교상담자 무엇을 해야 하는가? 상담학연구, 4(1), 281-293.

이상민, 오인수, 서수현 (2007). 한국적 학교상담 모형 개발을 위한 한국과 미국의 학교상담 비교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과 심리치료, 19(3), 539-567.

이창호, 이소엽, 조수연(2011). 청소년상담사 국가자격검정 응시작제 개선 결과보고. 서울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이숙영, 김창대 (2002). 상담전공 대학원 교육과정 표준화연구. 교육학연구, 40, 231-250.

이재창 (1996). 전문상담자 교육과 훈련에 관한 연구. 한국 심리학회지: 상담과 심리치료, 8, 1-26.

조병택 유병남(2006). 우리나라 대학에 있어 경영학교육의 과제와 개선방향 - 연구, 교육, 인증을 중심으로 . 상업교육연구. 14. 71-89.

최상근, 김동민, 오인수, 신을진, 김인규, 이일화, 이석영, 최보미(2011). Wee 프로젝트 운영성과 분석 및 발전계획 수립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최해림, 김영혜(2006). 한국의 상담자 교육과 훈련에 관한 연구 -상담심리 석,박사 교과과정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8(4).

한지영(2008). 미국과 한국의 공학교육인증 체제 비교에 대한 사례 연구. 공학교육연구, 11(1). 23-32.

홍선미(2010). 한국사회복지교육인증제의 도입방안 연구. 한국사회복지교육, 12. 123-145.

황순길, 류진아, 이경아, 장진이, 정재우 (2005). 학교청소년상담사 학교상담 활동모형 연구. 한국청소년상담원.

황순길, 이창호, 안희정, 조은경 (2000).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 실시에 관한 연구. 한국청소년상담원.

황순길, 주영아, 김인규, 김태선 (2004). 청소년상담사 국가자격제도 발전방안 연구. 한국청소년상담원.

(사)한국경영교육인증원(2007). 경영학교육 인증기준 및 예비 심사 인증신청서 작성편람.

한국공학교육인증원(2005). 공학인증기준 (KEC 2005).

(제)한국간호평가원(2012). 간호교육인증평가 기준집(간호학 학사학위과정).

한국의학교육평가원(2007). 제2주기 의과대학 인증평가를 위한 의과대학 인정평가기준.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2008). Guidelines and principles for accreditations of programs in professional psychology.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American School Counselor Association. (2003). The American School Counselor Association national model: A framework for school counseling programs. Alexandria, VA: Author.

CACREP (2009). CACREP Standards. Council for Accreditation of Counseling and Related Educational Programs.

CACREP(2009). CACREP Accreditation Manual. American Counseling Association. <http://www.cacrep.org/>

Commission on Accreditation(2009a). Guidelines and Principles for Accreditation of Programs in Professional Psychology.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Commission on Accreditation(2009b). Accreditation Operating Procedures of the Commission on Accreditation.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http://www.apa.org/ed/accreditation/>

V. IRB 심의 대상 여부(해당 칸에 ‘o’표시)

IRB 심의 대상	IRB 심의 대상 아님
	o